

연구보고서 2004-2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2004.7

류건식 · 이태열

## 머 리 말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층노후 소득보장체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감독여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더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그리고 규제감독의 중심에 서 있는 수탁기관의 규제감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먼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개관한 연후에,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둘러싼 선진국의 최근 추이와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특징과 수탁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7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대행 전무이사 김 창 수

# 목 차

요약문 .....	1
I. 서론 .....	19
1. 연구목적 .....	19
2. 연구내용 .....	20
II.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개관 및 선행연구 .....	22
1. 규제감독의 개념 및 필요성 .....	22
2. 연금프로우상의 규제감독체계 .....	23
3. 지배구조별 규제감독체계 .....	24
4. 퇴직연금상품별 규제감독체계 .....	27
5. 선행연구 .....	28
III.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	31
1. 퇴직연금의 규제감독기관 및 업무체계 .....	31
2.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	39
3.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	48
4.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	55
IV.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 .....	70
1.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	70
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특징 및 과제 .....	77
3.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상의 시사점 .....	81
V. 퇴직연금의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	83

1. 설문조사대상 및 설문조사내용 .....	83
2. 설문조사 분석결과 .....	86
3. 통계분석 결과 .....	102
4.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	107
<b>VI.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 .....</b>	<b>110</b>
1. 기본방향 .....	110
2. 세부추진방향 .....	119
3. 향후과제 .....	113
<b>VII. 요약 및 결론 .....</b>	<b>122</b>
<b>참고문헌 .....</b>	<b>128</b>
<b>부록 .....</b>	<b>130</b>
<별첨 I>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관련 설문서 .....	130
<별첨 II>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투자규제 .....	139
<별첨 III> OECD주요국의 연금기금 포트폴리오규제 .....	149
<별첨 IV>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안) .....	153

## 표 목 차

<표 II-1> 운용FLOW상에서 본 퇴직연금제도(미국) .....	23
<표 II-2> 연금운용 FLOW상의 규제감독체계 .....	24
<표 III-1> 퇴직연금 감독기구의 형태 .....	32
<표 III-2> 별도의 연금감독기구 형태인 OECD국가 .....	33
<표 III-3> 비분리 연금감독기구형태인 OECD국가 .....	35
<표 III-4> OECD주요국의 연금감독기관 및 주감독기관 비교 .....	36
<표 III-5> 연금프로우상의 연금감독업무 .....	37
<표 III-6> Prudent Man Rule과 Legal List Rule .....	40
<표 III-7> OECD 자산운용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42
<표 III-8> 연금기금의 최소분산투자규제 .....	43
<표 III-9> 연금기금의 자기투자규제 .....	44
<표 III-10> 연금기금의 총량규제 .....	45
<표 III-11> 연금기금의 의결권 지분제한규제 .....	46
<표 III-12> 수탁자책임의 법제현황 비교 .....	47
<표 III-13>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과정(예: 일본) .....	48
<표 III-14> ERISA법상의 수탁자책임규정 .....	50
<표 III-15> 연금제도 내부자에 대한 수탁자책임규정(일본) .....	51
<표 III-16> 운용기관 등에 대한 수탁자책임규정(일본) .....	52
<표 III-17> 가입자보호의무 및 금지행위 .....	52
<표 III-18> 수탁자책임 위반시 제재조치(주요별칙) .....	53
<표 III-19>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와 Fidelity Bond의 비교 .....	55
<표 III-20> 주요국 지급보증제도 비교 .....	60
<표 III-21> 지급보증제도의 운용형태비교 .....	61
<표 III-22> 선진국의 연금계리사 제도 및 역할 .....	62
<표 III-23> 조기경보프로그램의 발동사례 .....	67

<표 IV-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자산운용관련사항	70
<표 IV-2> 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72
<표 IV-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퇴직연금 감독사항	74
<표 IV-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관련사항	76
<표 V-1> 분석 대상	84
<표 V-2> 설문문항의 항목별 분류	85
<표 V-3> 퇴직연금 규제감독의 방향성 여부	86
<표 V-4>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	88
<표 V-5> 제도도입초기의 지배구조 선호도	89
<표 V-6> DC형 대비 DB형 퇴직연금 투자강도	89
<표 V-7> 질적규제와 양적규제의 선호도여부	90
<표 V-7> 연금투자규제의 방향	91
<표 V-9> 연금회계기준제정의 인식여부	92
<표 V-10> 연기금 위험관리체제의 선호도	92
<표 V-11>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94
<표 V-12>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96
<표 V-13> 수탁자책임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적정성여부	97
<표 V-14>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98
<표 V-15> 지급보증제도유형의 선호도	99
<표 V-16> 예금자보호법 규정의 적합성 여부	100
<표 V-17> 기타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101
<표 V-18>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102
<표 V-19>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103
<표 V-20>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105
<표 V-21> 기타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106
<표 VI-1>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성과비교	123

## 그림 목차

<그림 Ⅲ-1> 퇴직연금제도의 자발적 종결과 비자발적 종결 .....	64
--	----

## 요약문

### I. 서론

#### □ 연구목적

- 정부의 규제감독은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행법령과 선진국 연금기금 운용사례 등을 통해 규제감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감독규제방안설정이 종업원의 수급권보장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도모하고 규제감독체계의 기본틀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 □ 연구내용

- OECD 주요국의 규제감독체계 및 우리나라의 규제감독체계 등을 비교분석하고 제반 특징을 모색함.
-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측면에서의 규제감독방향성을 모색해 보고 제반 시사점을 도출함.
- 규제감독방안을 자산운용관련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함.

### II.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개관 및 선행연구

#### □ 규제감독의 필요성

- 규제가 법적인 장치에 의한 사전적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감독은 사후적 검사 및 보고, 행정처분 등으로 규제목적은

달성하도록 하는 사후적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규제감독이 지향하는 목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 충실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퇴직연금제도의 역할강화 등에 있음.

#### □ 퇴직연금의 규제감독체계

- 연금프로우상의 규제감독체계: 연금보험료를 각출하고(연금각출), 각출된 보험료를 운용하며(기금운용), 종업원에게 급부를 지급하는 연금운용 FLOW상에서 규제감독체계를 접근
- 지배구조별 규제감독체계: 연금기금의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 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간의 역할관계 등을 다루는 지배구조(계약형, 기금형, 회사형)상에서 규제감독체계를 접근
- 퇴직연금상품별 규제감독체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상품유형별에 기초하여 규제감독체계를 접근

#### □ 선행연구

- 국내 선행연구로는 신기철(2003), 류건식·이태열(2004) 등이 있으며, 선행연구로는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Helmut Reisen (1997), N.G.Terry and P.J.White(1997), OECD(2003), 山口修(2003), 土浪修(2002) 등의 연구가 존재함.

### Ⅲ.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 □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 자산운용을 둘러싼 환경변화: 퇴직연금운용의 전문·특화형 진전, 자율자산운용체계로의 전환,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규제감독 권고 등임.
- 최소분산투자규제 : 대체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양적규

- 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자율규제를 시행함.
- 자기투자규제 : 자기투자규제가 없는 국가에서도 최근 자기투자규제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총량규제 : 연금기금 운용의 투자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18개국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총량규제를 시행함.
  - 의결권지분제한규제: 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감사에 기여하기 위해 의결권지침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대함.

**□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 신탁이 발달하고 있는 영미의 경우, 선관주의(Prudent Man Rule)에 입각하여 수탁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성문법과 판례법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함.
  -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 등을 규정
- 일본 역시 영미식의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규정의 명문화가 2001년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됨.
- 연금운용의 자유화추이에 따른 수탁자책임강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탁자책임위반 소송사태가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빈발하여 운용기관에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구축 등이 요구됨.

**□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 미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해 최소적립기준이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에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에 대하여 최저책임준비금규제제도를 도입함.
  - 영국은 기본적인 최소적립요건은 95년 연금법에 기금의 자산가치가 기금의 부채규모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제시

- 지급보증체제의 도입 및 구축
  - 미국 : ① 최소적립요건의 강화에 의한 지급보증확보, ② PBGC에 의한 지급보증과 제도종료보험제도 도입 등
  - 영국 : ① 기업연금감독청(OPRA)의 설립과 수급권강화, ② 적립 기금확보차원의 최저적립기준(MFR)적용, ③ 연금보상제도(PCS)에 의한 지급보증 등
  - 일본 :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자산을 외부에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산시 정리재산의 잔고범위내에서 종업원 및 퇴직자의 수급권보전이 이루어지지만 재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밖에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실정
- 연금재정 검증체제의 구축
  - 연금계리사 등에 의한 재정감시기능강화, 급부보증의 상한설정, 감시강화에 의한 파산방지책마련, 퇴직연금 지급능력비율기준 마련 등으로 연금재정의 상시적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IV.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

#####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자산운용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 퇴직연금 수탁자책임은 사용자책임,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임, 정부의 책임 등으로, 퇴직연금운용의 감독유형은 사용자에 대한 감독,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에는 퇴직금의 우선변제, 퇴직금의 지급, 규약상의 채무건전성관련사항, 수급권보호 등과 같이 채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감독체계를 규정함.

- 사용자의 도산, 수탁기관의 도산 등에 의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관련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채, 규정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존재함.

##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특징 및 과제

-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측면
  - 개괄적인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위주로 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한계존재
  - 현행 법상에는 단지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기투자규제 등 세부규제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 존재
  -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제재조치 사항 등에 명문화할 필요성 존재
  - 수탁기관의 운용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독지침 및 감독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수탁자책임 규제감독체계측면
  - 수탁자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연금자산운용의 오류 및 실패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보증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수탁자 책임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에 의한 지급보증이 확립되도록 법적제도적측에서의 종합적인 대책방안수립 필요
  - 현행 법안에는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이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책임범위, 제재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 존재
- 재무건전성 규제감독체계 측면
  -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어 수탁기관도산시 종업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없는 한계존재
  - 현행 법상에는 미국 등과 같은 지급보증공사의 설립문제 및 최소

책임준비금규제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제도적으로 사용자도산시 종업원에 대한 수급권보호가 미흡

- 또한 연금계리사제도의 도입 등 연금제정의 건전성검증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보완됨으로써 상시적으로 연금제정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상의 시사점

-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들은 향후 법령의 수정과정에서, 그리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은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에 가능한 한 부합하도록 체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제3자적 감시기능차원에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체제의 전환이 요구되며, 재무건전성 규제감독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차원에서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장치마련이 요구됨.

## V. 퇴직연금의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 □ 설문조사 대상 및 설문조사내용

- 설문조사대상
  - 설문조사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방법은 각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담당자 중 책임자급 이상이 직접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

구 분	세 부 내 용			특 징
조사대상	보험회사 (22개사)	생명보험	12개사 (외국생보사포함)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담당자
		손해보험	10개사 (외국손보사포함)	
조사기간	2004. 2. 16~2. 28			-

- 설문조사내용

-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사항,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수탁자 책임관련 규제감독 사항, 재무건전성 관련(수급권보호) 규제감독사항, 기타 규제감독사항 등 5개부문

설문문항의 항목별 분류

구 분	문항수	비중(%)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 사항	8	26.7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6	20.0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7	23.3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6	20.0
기타 규제감독사항	3	10.0
전 체	30	100.0

□ 설문조사 분석 결과

- 퇴직연금규제감독의 방향성에서는 대부분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으로는 생보사의 경우 높은 관리비용, 정부의 지나친 규제 순임.
- 제도도입초기지배구조는 영미식보다 단순한 계약형지배구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중소형 보험회사에 비해 대형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질적규제보다는 양적규제를 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으로 인식함.
- 또한 대형보험회사가 중소형 보험회사 보다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더욱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 통계분석결과

-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 변수 B-1, 변수 B-3, 변수 B-5의 경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해보험회사/중소해보험회사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변수 B-2에 대한 Kruskal-Wallis 검증결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존재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B-1)	0.046	0.831	1.097	0.295
원칙적으로 사용주(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B-2)	4.662	0.031**	0.807	0.369
연금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B-3)	0.747	0.388	1.031	0.310
제도초기에는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B-4)	0.020	0.888	7.310	0.007**
근로자금융상품지식증대, 금융시장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존재(B-5)	0.001	0.971	0.345	0.557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이 유도하도록 감독당국이 적극 독려할 필요성존재(B-6)	0.313	0.576	2.885	0.089*
전 체	1.136	0.287	4.372	0.037**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 변수 C-3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변수 C-3(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에서 대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처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그리고 대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제시된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감독사항에 대해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규제감독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 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DC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가 요구됨(C-1)	0.381	0.537	0.391	0.532
사용자, 수탁기관등 연기금운용관련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제 제재조치구체화필요(C-2)	0.245	0.621	0.133	0.715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C-3)	2.273	0.132	2.905	0.088*
종업원정보제공충실, 서류관리·문서명확화, 수탁기관자체적인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책정에 대한 독려필요(C-4)	0.140	0.709	0.070	0.791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기준마련(C-5)	0.322	0.570	0.418	0.518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설정(C-6)	0.170	0.680	0.175	0.676
전 체	0.362	0.547	0.459	0.498

-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변수 D-2-1(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 존재)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10%유의수준하에서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
- 또한 변수 D-5(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은 대해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D-2)	2.227	0.136	0.755	0.385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존재(D-2-1)	3.106	0.078*	1.028	0.3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제9조1항 및 제9조2항)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D-4)	2.278	0.131	0.478	0.489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D-5)	0.059	0.808	3.488	0.062*
전 체	0.601	0.438	0.117	0.733

- 기타규제감독사항 : 변수 E-3에서는 각 그룹간(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해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변수 E-1 및 변수 E-2에서는 일부 그룹간에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기타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퇴직연금제도에 한해, 보험사에게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모색필요(E-1)	0.220	0.639	8.123	0.004**
영국 OPRA 등과 같은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운용할 필요성존재(E-2)	5.759	0.016**	0.174	0.677
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필요(E-3)	0.250	0.617	1.423	0.233
전 체	2.637	0.104	3.551	0.059*

□ 분석상의 의미

- 비록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결과이지만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측면에서는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 및 높은 관리비용 등이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안전성이 저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연금제도초기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연금제도초기의 투자규제는 양적규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미식 지배구조하에서 질적규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연금자산운용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수탁자책임 및 리스크관리문제가 향후 중요한 현안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선택사항에 원금보장형상품구체적으로 제시, 투자대상 및 투자규제의 점진적 완화, 수탁기관의 자주적 윤리규범의 수립 등에는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여타변수보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형 생보사그룹의 평균값이 전사평균값보다 낮다는 점이 특징적임.
  - 수탁자책임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다소 높다는 지적이 훨씬 많아 5천만원 과태료한도의 재조정이 요구됨.
- 재무관련성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사에서 특히 퇴직금우선변제조항이 수급권보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무건전성기준에 부합된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중소형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재무건전성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설정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과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금우선변제조항의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절실히 요구됨.
- 기타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영국식 독립된 감독기구 설치·운용 등은 신중한 검토작업하에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Kruskal-Wallis 검증결과,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경우는 대형손해보험사/중소형손해보험사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뿐만 아니라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보험업계 견해가 거의 일치
  - 연금계리사에 의한 검증문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서,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설정문제는 대형손해보험사/중소형손해보험사간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VI.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

### □ 기본방향

- 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연금재정의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이 지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삼위일체식 지급보증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됨.
- 자율투자규제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하며,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연금자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당국의 정책적 방향설정이 요구됨.

### □ 세부추진방향

#### <연금자산운용규제>

- 최소한도의 투자규제건지
  -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규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자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① 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가 바람직하며 ② 원칙적으로 사용자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요구되며, ③ 연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어느 정도의 투자규제의 한도를 설정할 것인 가하는 문제는 투자규제의 완화속도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수 있음.
- 단계적 투자규제정책의 수립
  - 단기적으로는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에 원금보장형 상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운용상품도 high risk - high return형이 아닌 low risk - low return형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투자규제의 원칙도 종래의 일본과 같이 법정투자원칙(legal list rule)을 최소한 2~3년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성숙과 종업원의 금융지식습득 등을 고려, 연금제도가 도입된 3년 이후부터는 영미식 선관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상시적 퇴직연금 운용 감독체계
  - 수탁기관의 운용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리스크 감독기준 및 규정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는 ①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 ② 사용자와 금융기관간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감독이, 영미식 지배구조하에서는 ① 수탁기관의 대리인문제감독 ② 수탁자책임 감시기능여부 등에 대한 감독이 리스크감독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수탁기관의 제반리스크를 분류하고 제반리스크별로 스코어링시스템방식에 의해 대처여부를 상시적으로 평가·측정할 수 있는 스코어링감독시스템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 <수탁자책임규제>

- 일반적인 수탁자책임률의 도입
  -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마다의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사용주, 운용기관마다 수탁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 행정처분, 배상책임 등을 수탁자책임 위반사항별로 차별화하여 반영바람직)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검토 :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배상책

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존재함.

- 투자교육 등 정보공시의 강화
  - 자산운용이 자율화되면 기업은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운용기관 및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즉 ①사용자 → 가입자(자산·부채 정보공시 의무화 등), ② 사용자 → 근로자대표회의, ③ 운용기관 → 사용자, ④ 사용자 → 주주·투자자 등 각각과 관련된 정보공시를 체크하여 감독규제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 자주적 윤리규범 및 컴플라이언스 체제구축 유도
  -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기율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는 ① 운용부문과 사무처리부문의 명확한 분리, ② 운용부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령준수부서를 설치하여 시장률 및 사내률의 철저 등이 요구됨.
  - 또한 자산운용업계 전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윤리규범의 책정과 준수를 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히 투자성과기준의 책정이 필요함.

### <재무건전성규제>

- 예금자보호법의 보완·정비
  - 건당 5,000만원이라는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을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준강제적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을 보

장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인 지급보증체제 확립

- 단기적으로는 우리실정에 맞는 정형화된 최소책임준비금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PBGC, 영국의 PCB 등과 같은 별도의 수급권보증기구가 설립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음(다만 설립시기 및 방법 등은 기업부담능력과 더불어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성 존재)
- 지급보증보험료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1안), 지급보증기구가입의 단계적 확대(2안)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필요

- 연금재정의 검증체제 정비

-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필요 :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연금계리사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상의 미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일정자격요건을 지닌 보험계리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연금계리사와 회계감사인,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한층 명확한 기준이 사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감독규제차원에서 지급능력비율제도 제정 등

- 중장기적으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일정한 틀마련을 검토함으로써 감독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더불어 가능한 한 연금기금의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책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또한 명시적인 기금종결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의적인 기금종결

을 통한 가입자의 피해방지 및 기금종결방지를 위한 기금자체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존재함.

- 연금회계기준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강화
  - 연금회계제도의 도입문제는 객관적인 비교가능성, 즉 회계정보의 투명성측면에서 검토됨과 아울러 종업원의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투자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연금회계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특히 연금정보공시를 통해 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의 자산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이 요청됨.
  - 즉 부채의 시가평가, 연금비용계상 등을 통해 연금부채구조에 따른 자산운용(ALM적 자산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산중시의 위험관리에서 부채중시의 위험관리(연금기금의 잉여금관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향후과제

- 운용기관의 에이전시문제 등에 대한 대책필요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운영시 ① 적립부족과 소득격차, ② 장수리스크와 역선택, ③ 운용기관의 대리인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이를 고려한 감독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① 확정기여형의 비과세한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② 확정기여형의 강제적인 적립을 통해 조기인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문제 ③ 대리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강화이외에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허용문제 검토
  -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에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복수의 자산관리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함.

- 연금기금의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행사문제 검토

- 연금기금의 운용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우리나라도 퇴직연금기금의 규모가 증대하고 기업의 경영감시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등을 통한 경영감시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운용기관의 수탁자책임관점에서 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의 범위(책무)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연금기금의 투자규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I. 서론

##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감독여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더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그리고 규제감독의 중심에 서 있는 수탁기관의 규제감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물론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이 입법예고 되어 있을 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제감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규제감독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그리고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등을 통해 향후 퇴직연금제도 운용시 고려되어야 할 규제감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규제감독하에서 제도를 설계·운용하느냐 여부는 노사간은 물론 자본 및 노동시장 등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감독방안설정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종업원의 수급권보장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 기본틀을 제시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먼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개관한 연후에,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둘러싼 선진국의 최근 추이 및 특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특징과 수탁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국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론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자산운용규제감독, 수탁자책임규제감독, 재무건전성 규제감독 등으로 구분하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봄으로써 조그마나마 규제감독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개관 및 선행연구에서는 규제감독의 개념, 연금프로우상의 규제감독체계, 지배구조별 규제감독체계, 퇴직연금상품별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본 후에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 III 장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에서는 규제감독을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을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동향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 III 장에서는 OECD 국가의 퇴직연금감독체계의 특징을 퇴직연금감독기구의 형태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제Ⅳ장 퇴직연금규제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에서는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산운용관련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규제감독,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법령상의 특징(문제점)과 과제,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Ⅴ장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은 보험회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탁기관의 대표성을 지닌 보험회사는 과연 어떠한 규제감독체계를 선호하는가를 설문조사방법 및 통계분석방법 등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규제감독체계상의 특징 및 시사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Ⅵ장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으로 먼저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을 연금자산운용규제감독, 수탁자책임규제감독, 재무건전성규제감독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향후과제를 모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 II.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개관 및 선행연구

### 1. 규제감독의 개념 및 필요성

퇴직연금 규제감독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규제의 목적이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의해 종업원의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형화된 규제의 틀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감독은 규제의 목적이 무리없이 달성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적의 개념이 아닌 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규제가 법적 장치에 의한 사전적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감독은 감독당국의 의한 사후적 검사 및 보고, 행정처분 등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후적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감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① 충실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②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③ 퇴직연금제도의 역할강화 등에 있다는 점에서 규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규제와 감독개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철저한 감독정책의 수행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 퇴직연금제도의 본래목적이 달성될 수 된다는 점에서 규제와 감독의 개념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고자 한다.

## 2. 연금 프로우 상의 규제감독체계

종래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규제감독체계<sup>1)</sup>는 연금보험료를 각출하고 (연금각출), 각출된 연금보험료를 운용하며(기금운용), 종업원에게 급부를 지급(급부지급)하는 연금운용 FLOW 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일례로 1974년에 제정된 미국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법)의 기본구조는 이와 같은 3대운용 프로우에 기초하여 각종 연금관련제도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규모의 확대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 필요성과 기금의 투명성이 요구됨에 대두됨에 따라 연금공시와 관련된 규제감독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는 1987년 기업연금회계제도 정비(FAS 87적용)로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표 II-1>참조).

<표 II-1> 운용FLOW상에서 본 퇴직연금제도(미국)

구분	ERISA법			FAS규정
	연금각출	기금운용	급부지급	연금공시
제도(예)	연금세제제도	수탁자책임제도	지급보증제도	연금회계제도
관할청	내국세입청 (IRS)	연금복지 급 부 국 (PWBA)	연금급부 보증공사 (PBGC)	증권거래 위 원 회 (SEC)
보호대상	종업원수급권보호중심			투자자보호중심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업원 수급권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용프로우상의 규제감독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금각출, 기금운용, 급부지급, 연금공시

1)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기본골격이 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및 감독정책이 어떠한 틀하에서 수립되고 있는가를 규제감독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제감독사항을 국내특성에 부합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11-2> 연금운용 FLOW상의 규제감독체제

분류	세부적인 관련 규제감독사항(예시)
연금각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의 인가, 적격요건, 제도 설계 등과 관련된 사항</li> <li>- 계산기초율설정 및 재정방식선택, PSL상각과 관련된 사항</li> <li>- 연금보험료 각출(청산기준, 계속기준), 최소각출 및 추가각출의무, 연금세제 등과 관련된 사항 등</li> </ul>
기금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금운용규제(양적규제, 자율규제) 등과 관련 사항</li> <li>- 지배구조(계약형, 기금형, 회사형)하에서의 수탁자책임 규정 관련된 사항</li> <li>- 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감독규제사항 등</li> </ul>
급부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산, 수탁기관도산 등과 관련된 사항</li> <li>- 지급보증제도(PBGC), 최소책임준비금규제 등과 같은 건전성 관련사항</li> <li>- 청산 및 계약이전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li> </ul>
연금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제도와 관련된 사항(재무제표공시 등)</li> <li>- 연금회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연금회계관련 등)</li> </ul>

### 3. 지배구조별 규제감독체제

지배구조는 연금기금의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간의 역할관계 등 연기금의 운용구조로서 계약형, 기금형, 회사형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노동 및 금융시장 발전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

- 2) 여기에서는 규제감독을 주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규제감독측면에서 자산운용 관련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을 급부지급과 관련된 규제감독측면에서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금각출과 관련된 규제감독 및 연금공시에 관련된 규제감독은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기금형은 노사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금을 일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계약형보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지배구조하에서 운용하는 형태여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떠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수급권, 금융정책 및 시장의 여건, 그리고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금기금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경영감시행위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제고 등), 적절한 지배구조의 선택은 퇴직연금제도에서 핵심적 과제이다. 결국 지배구조는 연금기금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그리고 노사간의 이해 및 적응이 용이하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한 단계별 검토작업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가. 계약형

금융회사에 완전위탁하여 운용하는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감독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형은 금융회사가 모든 절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사용자와의 금전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이익의 상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회사들의 상당수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효과(contagion effect)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계약형으로 주된 계약인수를 하는 금융회사가 전체기금을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산운용업을 전문으로 하는 투신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①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감독 중시 ② 사용자와 금융기관간 불공정한 계약(예: 금전계약)방지 ③ 근로자와 이익상충이 없도록 사전에 정형화된 규약설정 등에 감

독당국의 감독초점이 맞추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 나. 기금형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업연금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기금형 지배구조하에서는 개별연금기금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즉 기금형은 회사와 독립된 기금(기업연금기금)을 설치하여 정책결정은 노사동수의 위원회에서 하되, 기금운용 등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기금형은 노사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금을 일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계약형보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형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관리형과 금융기관 등 관련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분류되며 기업연금기금에서 직접, 또는 전문적인 펀드매니저를 고용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 회사형

산업별로 별도의 기금을 회사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형 지배구조하에서는 산업별 전체의 감독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회사형은 산업별로 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기업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역할을 하고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가 공고한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산업별로 기업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특정회사가 도산되더라도 기업연금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연금이 전 산업에 강제적으로 적용될 때 성격이 비슷한 산업끼리 회사형을 설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연대가 약한 경우에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4. 퇴직연금상품별 규제감독체계

### 가.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지배구조하에서는 수탁자책임관련 규제 및 수탁자책임위반시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감독이 중요하다. 특히 감독자가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DC형 제도의 경우 기금의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라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반면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시가 중요)하게 된다. 즉 운용리스크를 종업원이 지게 되므로 급부의 지급과 관련된 규제감독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등 수탁자의무 위반시의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은 보다 엄격해질 것이다. 특히 수탁자책임위반에 따른 소송사례의 발생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며 운용기관 등의 에이전시문제 최소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도 점점 증대할 것이다. 확정기여형 규제감독이 사후적 규제감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확정급여형 규제감독은 사전적 규제감독적 성격(계산기초율 및 책임준비금규제 등)을 띄고 있다.

### 나.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지배구조하에서는 사업자가 모든 운용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책임준비금규제, 연금수리 및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감독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될 것이며, 정기적인 회계감사, 재정재계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등 엄격한 규제감독이 요구됨으로써 확정기여형에 비해 높은 사전적 규제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통한 지급보장이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확정기여형에 비해 양적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확정급여형의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탁자책임규제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규제감독의 특성을 비교할 때 확정급여형은 양적투자규제중심(건전성장화와 리스크관리차원), 확정기여형은 수탁자책임규제중심의 규제감독을 지향하게 된다.

## 5. 선행연구

퇴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신기철(2003)<sup>3)</sup>은 기업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각국 기업연금의 주요 지배구조를 미국, 영국 및 일본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연금 도입방향에 비추어 금융산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의 경우 신탁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금융관련 지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계약형이 초기 단계에 지배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기업연금의 설계 및 회사의 장단기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 컨설팅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고,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는 기업연금 기금운용의 우위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류건식(2003)<sup>4)</sup>은 퇴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주로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과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규제감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진국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및 퇴직

3) 신기철, 「기업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증권예탁원 증권예탁지』, 2003.4.

4) 류건식, 「퇴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원주최 정책세미나자료』, 2003. 10.

연금감독체계, 우리나라의 규제감독현황 및 특징, 규제감독에 대한 실증분석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신기철(2003)<sup>5)</sup>은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 규제 및 감독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도도입초기에는 제도도입의 활성화가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각종 규제 및 감독의 강화보다는 제도내용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기업연금제도의 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적립을 유도하되, 일부사내 적립허용 등을 통해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연금제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주호(2004)<sup>6)</sup>는 연기금 지급능력 안전성을 위한 장기상각 전략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연기금투자전략관점에서 최소분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연기금지급능력 및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로는 Helmut Reisen (1997)<sup>7)</sup>, N.G.Terry and P.J. White(1997)<sup>8)</sup>, OECD(2003)<sup>9)</sup> 등이 있는데, 특히 Helmut Reisen (1997)의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연금투자규제 동향과 추이를 분석하고 투자규제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山口修(2003)<sup>10)</sup>는 일본 기업

5) 신기철, 「기업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제고방안」, 『노동연구원 전문가포럼자료』, 2003.3.

6) 성주호, 「연기금 지급능력 안전성을 위한 장기상각 전략방안」, 『보험개발연구』, 2004년 3월., PP. 67~96.

7)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8)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9)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

연금제도중에서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수탁자 책임규제내용 및 특징 등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土浪修(2002)<sup>11)</sup>는 미국과 일본의 수탁자책임규제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반문제점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규제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규제감독체계를 연금운용의 프로우상에서 이론적 분석, 실증적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

10) 山口修(2003), 『確定釀出年金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3. 5.

11)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險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 III.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 1. 퇴직연금의 규제감독기관 및 업무체계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의 감독기관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전에 ① 퇴직연금의 주감독기관<sup>12)</sup> 독립여부, 규모 등 감독기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② 퇴직연금 프로우상 규제 감독 체계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자산 운용, 수탁자 책임, 재무건전성 부문 등에 대한 감독이 전체 감독 체제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③ 주감독기관과 더불어 퇴직연금 감독에 있어서 협조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들을 포함하여 상호 업무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 가. 퇴직연금 감독기관의 일반적 특징

OECD 주요 회원국의 퇴직연금 규제 감독 기관의 특징은 전체 금융 감독 체계에 대한 국가별 특징과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II-1>에 보는 바와 같이 ① 퇴직연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 산업을 통합된 감독기구가 감독하는 경우, ② 분리되어 있는 보험산업 감독기구가 퇴직연금까지 감독하는 경우 ③ 퇴직연금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적인 연금 감독기관을 두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주감독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의 감독이 단일기관이 아닌 다양한 기관의 협조 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해당 기관 중 퇴직연금 감독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심기관을 의미한다.

&lt;표 III-1&gt; 퇴직연금 감독기구의 형태

통합금융감독기구	보험감독기구	독립 연금감독기구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캐나다	핀란드	일본*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독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뉴질랜드	스웨덴*
아이슬랜드	폴란드	스위스
한국	포르투갈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터키	

주 : \* 의 의미는 금융감독기구는 통합되어 있으나 기업연금 감독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OECD, *Supervisory Structure for Private Pension Fund : Survey Analysis*, 2003.11.

최근 호주(1998), 한국(1999), 아이슬랜드(1999), 헝가리(2000) 등의 국가들이 금융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금 등 모든 금융 관련 업무가 통일된 감독기구의 규제를 받게 된다.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장점은 금융 감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독 당국에 대한 금융기관의 순응 그리고 신규 금융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분리된 감독기구들도 적절한 정보 교환 및 협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상품의 특수성과 복잡한 사회적 이해관계 때문에 분리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으며, 그 결과 일본, 스웨덴, 영국의 경우는 통일된 금융감독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감독기구는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III-2> 별도의 연금감독기구 형태인 OECD국가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형태	기관명	OPRA	COVIP	FI	PENSION BOARD	PENSION BUREAU	CONSA R
	위원회 존 재	유	유	유	유	무	유
	인 원	260	60	-	34	30	170
지위 및 예산	법 적 독립성	독립	독립	독립	독립	외부 통제	독립
	관 할 부 처	수상	Ministry of Laour & Ministry of the economy	정부	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Affair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inistry of Finance
	예 산 출 처	정부예산 + 회원사	정부예산	정부예산 + 회원사	회원사	정부예산	정부예산 + 회원사
기관장	임 명 자	위원회	정부	정부	위원회와 관할부처	관할부처 장관	재무부
	임 기 보 장	없음	4년	6년	5년	없음	없음
사적연금	연기금 의 수	103,588 (연금 계약)	534	-	99,987 (연금 계약)	1.807 (계약 포함)	11
	계약자 의 수 천명)	40,000	1,907	-	630	14,116	29,421
	연기금 규 모 (10억 유로)	1,050	27.7	-	44	692.6	40.8

자료 : <표 III-1>과 동일

- 13) 우리나라의 경우는 퇴직연금 제도가 출범하지 않았으나 계약형의 형태로 도입될 것이 확실한 만큼 이 경우 자연스럽게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수탁 및 운용 기관을 감독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을 감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2>는 퇴직연금감독기구가 별도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며 <표 III-3>은 퇴직연금감독기구가 다른 조직내의 하부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양자간의 차이를 몇가지 분야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14)</sup>

첫째, 연금 계약자 및 연기금 규모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연금 감독기구가 독립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과 일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호주 및 독일<sup>15)</sup> 등은 충분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연금감독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연금의 규모나 계약자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퇴직연금 감독 기능의 법적 독립성 여부와 위원회 존재 유무에 따라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감독 기능의 법적 독립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퇴직연금감독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퇴직연금 감독 기능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퇴직 연금감독기구의 관할 부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연금감독기구가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재정이나 경제 전반을 다루는 경제부처보다는 노동, 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관할 부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상이 직접 관할 정부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의 출처를 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별도로 존재하는 연금감독기관의 예산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통합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

14) 비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주감독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15) 독일의 퇴직연금의 경우 연기금 자체가 별도 계정으로 분리되지 않은 특수성이 독립된 연금 감독기구 설치의 장애요인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에는 회원사로부터 각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통합금융감독기구 자체가 회원사로부터의 회비 또는 감독수수료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 비분리 연금감독기구 형태인 OECD국가

		호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독일	덴마크	캐나다
형태	기관명	APRA	FME	Government Actuary	DGFSP	BAFin	FSA	OSFI-PPPD
	위원회 존재	유	유	무	무	유	유	무
	인원	-	7	3	-	29	15	20
지위 및 예산	법적 독립성	독립	독립	외부 통제	외부 통제	독립	독립	독립
	관할부처	Commonwealth Parliament & supervised industries	Minister of Commerc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of Economy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예출처	회원사	회원사	정부예산 + 회원사	정부예산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기관장	임명자	연방재무상	위원회	관할부처	관할부처	대통령	수상	총독
	임기	5년	4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년
사적연금	연기금의 수	249,262 (계약 포함)	82	808	-	139	80	1,195 (연금 계약)
	계약자의 수 (천명)	24,800	228	701	-	3,416	720	557
	연기금 규모 (10억 유로)	281.5	7.7	5.1	-	68.7	32.2	56.1

주 : <표 III-1>과 동일

### 나. 퇴직연금의 연금감독기관 및 주감독기관

퇴직연금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이외에도 각출, 급부지급, 청산, 조세 등 다양한 문제와 결부되어진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감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나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표 III-4> OECD주요국의 연금감독기관 및 주감독기관 비교

	국가명	연금감독기관	주감독기관
비 분 리  연 금 감 독 기 구	호주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Australian Tax Office (ATO)	APRA
	아이슬란드	Ministry of Finance(M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ME) Internal Revenue Directorate (IRD)	FME
	뉴질랜드	Gov. Actuary at the Insurance and Superannuation Unit (ISU) of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GA(ISU)
	스페인	General Directorate for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Plans (DGSFP)	DGSFP
	독일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	BAFin
	덴마크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FSA)	FSA
	캐나다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 Provincials Pensions Supervisory Authorities	연방연금 : OSFI 지방연금은 별도의 기관 존재

자료 : <표 III-1>과 동일

<표 III-4>는 OECD 주요 국가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국가별로 설명한 표이다. 이들 기관은 퇴직연금에 대한 주감독기관과 협조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정부부처인

경우가 많으며 그 밖에도 세무당국이나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도 한다.

다. 퇴직연금 프로우상의 연금감독업무

<표 III-5>는 퇴직연금의 프로우 상에서 어떠한 기구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5> 연금 프로우상의 연금감독업무

	인가 등록	세금 적격 심사	지배 구조	각출	계약 유지 통산	수급권	자산 운용	자산 위탁	계리 회계	관리/마케팅 비용	공시	계약 이전	
별도 연금 감독 기관	영국	OPRA	IR	OPRA		Industrial Tribunals	OPRA	n/a	OPRA	FSA	OPRA		
	이탈리아	COVIP BI ISVAP CONS-OB	자동 절차	COV-IP	n/a	COVIP		COV-IP BI	COVI-P	COVIP CONS-OB	COV-IP CON-OB	COV-IP	
	스웨덴	FI	TA	FI									
	아일랜드	PB	TA	PB			n/a	n/a	PB	n/a	PB		
	일본	MHLW						FSA	MHLW				
비분리 연금 감독 기관	멕시코	CONS-AR	MF	CON-SAR	IMSS		CONSAR						
	호주	APRA	ATO	ASIC ATO	ATO APRA		APRA		ASIC		APR-A		
	아이슬란드	MF FME	IRD	FME	IRD FME	FME							
	뉴질랜드	GA	n/a	n/a	Trustees								
	스페인	DGSFP	TA	DGSFP									
	독일	BAFin	TA	BAFin									
	덴마크	FSA	TA	FSA									
	캐나다	OSFI	CCRA	OSFI						Plan Sponsor	OSFI		

주 : TA는 Tax Authority

자료: <표 III-1>과 동일

<표 III-5>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감독기구가 담당하고 있

는 분야이며 그 밖의 영역은 주감독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의 연금운용 프로우에서 주감독기구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호주 및 멕시코의 경우, 많은 분야에서 협조기관의 책임하에 퇴직연금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여러 기관이 책임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일본의 경우는 노동후생성(MHLW)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책임기관으로 나타나 있으나 주감독기관(Pension Bureau)이 노동후생성의 산하기관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부분의 연금프로우 상에서 주감독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6)</sup>

퇴직연금 관리의 프로우상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감독기관이 아닌 협력 기관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세금적격심사가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분야 감독 책임이 조세당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관리 및 마케팅 비용 관련 감독이 영국, 호주, 캐나다 3개국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퇴직연금 감독 분야는 자산운용 분야를 비롯해서 대부분 주감독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지배구조, 각출, 계약유지 및 통산, 수급권, 자산위탁, 공시 등에서 1~2개국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연금감독기관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나 다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와 관리·마케팅 비용 부문에 대한 감독을 제외하고는 주로 주감독기관의 책임하에 감독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 뉴질랜드의 경우는 주감독기구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보험계리사 조직과 수탁기관에 의해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 가. 자산운용을 둘러싼 최근 환경변화

#### 1) 퇴직연금운용의 전문·특화형 진전

미국의 경우 1950년대는 채권중심의 운용(주식비율이 채권을 상회하게 된 것은 1960년대)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운용형태를 보더라도 1970년대까지는 대형은행 신탁부문의 밸런스형 운용이거나 생명보험사의 일반계정에 의한 운용이 특징이다. 그러나 ERISA법 제정이후부터 밸런스형 운용으로부터 전문·특화형 운용에로의 확산, Master Trust의 출현 영향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와 자산운용업무의 분리 등 독립·분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운용효율의 향상을 위해 Boutique형의 운용(예: 미국대형주에 의해 특화한 운용) 등 운용기관의 전문·특화의 진전과 이것을 증대시키는 一元的 관리(Master Trust)<sup>17)</sup>가 조류이다. 영국의 경우 연금기금의 운용은 채권 등에 비해 주식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밸런스형의 운용위탁이 많았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과거 20년 인플레이션: 일본 2.2%, 미국 4.9%, 영국 6.2%)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채권보다도 주식중심의 운용이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연금법(Pension Act)에 의해 최저적립기준이 도입되고 자산운용이 Prudent Man Rule로 전환됨으로써 ALM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 Asset Mix를 책정하는 기금이 증가하였다. 이는 Balance형 운용에서 전문·특화형 운용기관을 부분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91

17) Master Trust의 중심적인 업무는 자산관리·자금결제, 현금관리, 통일적인 Reporting 등이며 증권대부, 성과측정, 리스크관리, 급부지급, 가입자관리 등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업무(부가적 서비스)도 행한다.

년 언론재벌 맥스웰(Robert Maxwell)사건을 계기로 연금의 자산관리를 분리하여 행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1997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자산관리업무가 인가업무로 되고 더불어 분리관리의무 등도 규정되었다. 영국의 연금기금운용에서도 미국처럼 전문·분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 연금기금 운용상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자산관리와 자산운용의 분리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연금기금운용은 지금까지 자산배분규제 등 다양한 행정규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타은행·생명보험사의 밸런스형 운용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용규제의 완화 등에 따라 자산운용의 전문·분화는 필연적인 시대적 조류임을 인식, 자산규모가 큰 기금을 중심으로 특화형운용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2) 자율자산운용체계로의 전환

법적인 측면에서의 자산운용체계는 크게 영·미로 대표되는 Prudent Man Rule과 종래 일본의 Legal List Rule에서 접근할 수 있다. <표 III-6>에서 처럼 Prudent Man Rule은 수탁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유연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 III-6> Prudent Man Rule과 Legal List Rule

Prudent Man Rule	Legal List Rule
연금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사려깊은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수탁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연금운용의 투자대상자산 및 운용비율을 구체적으로 한정 열거, 그것을 준수하면 수탁자가 책임을 다하는 방식
기업연금기본법(ERISA, 연금법)	5-3-3-2 규제 등(종래 일본)

### 3)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규제감독권고

2003년 OECD는 5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된 퇴직연금원칙에 대한 OECD 권고안(OECD Recommendation on Core Principles of Occupational Pension)을 확정하였으며 일부 핵심원칙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있다. 즉

첫째, 자산운용가이드라인 1은 선관주의의 원칙이다. 즉 OECD의 자산운용의 대원칙은 선관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OECD 가이드라인 2는 연기금 자산평가에 관한 원칙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연기금 자산 평가에 대해 공개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치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 차이가 투명하게 나타나야 하고 평가기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OECD 가이드라인 3은 선관주의기준에 관한 원칙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선관주의가 이행되기 위해서 연기금의 자산관리가 전문성, 신의, 성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OECD 가이드라인 4는 포트폴리오의 제한에 관한 원칙이다. OECD 가이드라인은 자산 운용의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특정 자산의 투자를 장려하는 형태이거나 자산 운용자의 능력을 제약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OECD 가이드라인 5는 투자정책에 관한 원칙이다. 즉 OECD 가이드라인은 자산 운용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 수정 및 운용상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연금자산의 투자정책이 수행되도

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7> OECD 자산운용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원칙	세 부 내 용
가이드라인 1 (선관주의)	자산관리는 선관주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자산의 분산, 만기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함.
가이드 라인 2 (연 기 금 자산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기금 평가에 대한 적절하고 공개적인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li> <li>② 모든 자산은 시가 또는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시가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 가치를 동시에 공표하는 것을 권고함</li> <li>③ 회계, 보고, 계리, 적립을 위해 자산 가치의 평가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자산 가치 평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차이가 투명하게 나타나야 함. 다만 적절한 사유가 될 경우 계리와 적립을 위한 자산 평가는 평활화 기법이 적용될 수 있을 수 있음</li> <li>④ 자산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론은 연기금 운용기관, 자산 운용관 관련된 모든 경제주체, 연기금 가입 및 수급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li> </ol>
가이드 라인 3 (선관주의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연기금의 자산관리는 충분한 주의와 신의성실에 기초하여 관리되어 져야 함.</li> <li>② 연금 계약 또는 연기금의 운용 기관과 다른 관련 주체들은 주의, 전문적 기술, 신의, 적절한 성실 등과 같은 선관 주의가 적용되어야 함</li> <li>③ 연금 계약 또는 연기금의 운용 기관과 다른 관련 주체들은 연기금과 연금의 계약 및 수급자들에 충성의무를 짐</li> <li>④ 연기금의 운용기관은 자산 관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감시할 적절한 내부 통제 절차의 설치를 포함하는 자산 관리의 수행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연금계약 및 연기금 자산 운용 기관은 법적으로 마련하여야 함</li> </ol>
가이드라인4 (포트폴리오 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투자 자산에 따라 분산 투자, 만기 관리, 위험 관리의 원칙에 합치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상한선을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비슷한 목적으로 허용 또는 추천 자산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일부자산은 엄격히 제한 할 수도 있음. 그러나 하한선을 두는 포트폴리오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li> <li>② 적절한 분산투자, 자산과 부채의 매칭 또는 다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위험 관리 기법의 활용을 저해하는 포트폴리오 제한은 자체되어야 함. 자산과 부채 만기의 매칭은 중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제도 차원에서 확립되어 있어야 함</li> <li>③ 자산별도 투자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상한선 초과할 수 있는 연금 자산 또는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함</li> <li>④ 연기금에 대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한 자기투자는 금지되거나 허용될 경우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li> <li>⑤ 동일한 주체 및 그룹에 대한 투자는 연기금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li> <li>⑥ 통화 매칭과 관련한 경우나 투자 자본에 대한 규정이 국가나 지역으로 제한된 경우 그리고 지정 수탁기관의 신탁 자산으로 위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금지는 부적절함.</li> <li>⑦ 파생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의 활용에 대해서는 효용과 부적절한 활용에 따르는 위험의 양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함</li> <li>⑧ 양적 포트폴리오 규제와 관련된 모든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게 연기금 관리자의 능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지 자산의 최적 분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되어야 함</li> </ol>
가이드라인5 (투자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산 운용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전체 투자 정책을 공표하고 준수하여야 함.</li> <li>② 투자 정책은 분명한 연기금의 투자 목적과 이를 위해 적절한 분산 및 위험 관리를 감안한 선관주의, 연기금의 장기적인 의무와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의 법적 제한 등을 이룰 수 있는 규칙을 수립하여야 함</li> <li>③ 투자 정책은 연기금의 전략적인 자산 분배 전략(주요 투자 대상에 대한 장기 자산 분배), 연기금과 각각의 투자 항목을 위한 전체 운용 목표 그리고 분배 및 운용 목적을 파악할 수단에 대한 규정을 최소한만 설정하여야 함</li> <li>④ 투자 정책은 자산-부채 매칭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li> <li>⑤ 연기금 관리자와 기타 책임 주체가 정기적으로 투자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과정이 설정되어야 함</li> <li>⑥ 연금 계약자들이 투자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한 선택 대상을 제공하고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li> <li>⑦ 투자정책의 실행 및 자산 운용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함.</li> </ol>

자료 : OECD, Draft Guidelines on Pension Fund Asset Management, 2003.11.

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내용 및 특징<sup>18)</sup>

1) 최소분산투자규제

법규상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투자한도(예: 부동산의 몇%)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16개국, 최소분산투자규제 자체가 없는 국가가 9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대륙국가는 최소분산투자규제를 시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영미 등은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선언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에 의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는 영미 등을 포함 11개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DB형에 대해서는 양적규제, DC형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표 III-8> 참조).

<표 III-8> 연금기금의 최소분산투자규제

구분	해당 국가
법규상 규정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16개국)
일반적 규정	영국, 미국(2개국)
규정 없음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스웨덴(9개국)

자료 :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

18) 자세한 내용은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을 참조할 것.

## 2) 자기투자규제

자기투자규제는 원칙적으로 충실의무(이익상반행위금지) 등의 수탁자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사용자(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자기투자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체코 등 5개국은 원칙적으로 자기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기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투자한도(예: 기업주자산의 10%이내)를 설정한 국가가 16개국에 이르고 있다. 자기투자규제가 없는 국가에서도 최근에는 자기투자규제의 필요성을 인식, 자기투자규제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경우는 자기투자규제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기업주 자산이 5%초과시에는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기투자규제는 종업원의 이익에 보다 초점을 맞춘 투자규제라는 점에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핵심 투자규제라 할 수 있다.

&lt;표 III-9&gt; 연금기금의 자기투자규제

구 분	해당국가
자기 투자 원칙 금지	체코, 아이슬란드(단, 연금가입자는 엄격한 규정하에 가능), 노르웨이(단, 기업주대출은 담보전제하에 20%이내 가능), 폴란드, 터키 (5개국)
자기 투자 한도 설정	호주(기업주자산 5%이내), 오스트리아(10%이내), 벨기에(15%이내), 캐나다(10%이내), 스페인(10%이내), 이탈리아(20%이내), 멕시코(5%이내, 특별한 경우 10%이내), 네덜란드(5%이내), 포르투갈(20%이내), 스위스(10%이내), 영국(5%이내), 미국(모든 DB형과 일부 DC형의 경우 10%이내), 핀란드(25%이내), 독일(5%이내), 덴마크(8%이내), 헝가리(10%이내) (16개국)
자기 투자 규제 없음	아일랜드(제한 없음, 단, 기업주자산투자 5%초과시 공시 의무),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6개국)

자료 : <표 III-8>과 동일

3) 총량규제

연금기금 운용의 투자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총 18개국으로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타국가처럼 엄격한 총량규제는 하지 않지만, 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미국법원이 인정한 자산으로 투자제한함으로써 연금기금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총량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로는 호주 등 9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투자 가이드라인 자체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연금기금의 자율운용폭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분산투자규제 및 총량규제는 효율적인 내부통제기능 존재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0> 연금기금의 총량규제

구분	해당국가
규제 존재	오스트리아(35%이상은 담보부채권, 국채등에 투자), 벨기에(유동자산은 은행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금융기관에 한해 투자가능), 캐나다(해외투자30%이내), 체코(해외투자는 OECD 국가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한함), 덴마크(비상장위험 등 위험자산은 70%), 핀란드(유로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은 20%), 독일(70% 유동자산), 헝가리(해외투자 30%초과금지), 포르투갈(20% 해외투자), 스페인(90%자산은 공식적 거래 시장에서 인정자산투자), 스위스(파생상품은 헤지용으로 제한, 30% 해외투자, 상품별제한), 터키(국채는 30%이상, 거래소 주식투자는 20%이하), 노르웨이(연금지급시 사용하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자산에 적어도 80%투자), 폴란드(해외투자 5%). 아이슬란드(정보보증채권, 담보대출 및 증권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 50%이상 편입금지), 이탈리아(1/3이상의 자산을 연금지급통화와 동일한 통화표시자산에 투자), 미국(미국법원의 인정자산으로 제한) (18개국)
규제 없음	호주,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9개국)

자료 : <표 III-8>과 동일

## 4) 의결권지분 제한규제

지분한도제한이 없는 국가로는 호주, 영국, 미국 등 14개국 등인 것으로 나타나 연금기금이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예: 의결권행사)을 담당하게 하는 국가가 증대하고 있다. 즉 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감사에 기여하기 위해 의결권지침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미국 및 일본 등에서는 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위반을 수탁자책임위반으로 보아 소송사태가 빈발하는 등 기관투자자로서의 연금기금의 역할을 점점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체코 등 12개국은 의결권지분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덴마크 등은 의결권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연금기금의 경영감시기능 역할(광의의 수탁자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lt;표 III-11&gt; 연금기금의 의결권 지분제한규제

구 분	해당국가
지분 한도 제한 없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14개국)
지분 한도 제한 존재	캐나다(동일회사 의결권지분 30%이내), 체코(20%이내), 핀란드(5%이내), 독일(5%이내), 헝가리(10%이내), 아이슬란드(15%이내), 이탈리아(폐쇄형투자펀드25%이내), 멕시코(20%이내), 폴란드(10%이내), 포르투갈(의결권지분은 20%이내), 스페인(5%이내), 터키(5%이내) (12개국)
의결권 행사금지	덴마크(1개국)

자료 : <표 III-8>과 동일

### 3.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 가.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최근환경변화

##### 1)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신탁이 발달하고 있는 영미의 경우, Prudent Man Rule에 입각하여 수탁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성문법과 판례법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이전에는 전적으로 판례법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ERISA법의 제정으로 엄격한 성문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여전히 판례법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1995년 연금법에 수탁자책임규정이 설정되어 판례법과 병행하고 있다.

<표 III-12> 수탁자책임의 법제현황 비교

구분	미국	영국	일본
법제	성문법(ERISA)	판례법, 연금법	성문법(2002년 이후)
기준	수탁자책임규정위반	수탁자책임규정위반	수탁자책임규정위반

미국은 수탁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 기금운영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수탁자이며, 수수료를 받고 어드바이스하는 경우도 수탁자 범주에 포함하여 수탁자책임범위를 명확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영미식의 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책임규정의 명문화가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버블붕괴이후 연금재정의 위기가 표면화되자, 1997년 4월 후생성은 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영미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lt;표 III-13&gt;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과정(예: 일본)

일 시	내 용
1989년 12월	개정 후생연금보험법 성립(1990년 4월 시행)
1996년 6월	후생연금기금연합회·수탁자책임연구회, 일본수탁자책임에 대하여 후생성·후생연금기금제도연구회, 보고
1997년 4월	후생성, 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 제정
2000년 3월, 4월	자주운용관련법(2001년 4월 시행)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개혁법 성립, 후생연금기금연합회, 『수탁자책임 Fact Book(운용기관편)』 발간
2001년 6월	확정급부기업연금법(2002년4월시행), 확정각출연금법(2001년 10월 시행)제정

자료 : 土浪 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 9., p. 80.

영국은 직역연금수탁자(OPT: Occupational Pension Trustee)가 연금 운용시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규정한 규칙 및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연금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이 경우 수탁자배상책임을 지는 수탁자범주에는 직역연금을 위탁관리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고용되어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도 포함시키고 있다.

## 2) 수탁자책임관련 소송의 증대

연금운용의 자유화 추이에 따른 수탁자책임의 강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탁자책임위반 소송사례가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용기관에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고도의 기술 이외에 엄

19) 土浪 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 9., p. 80.

격한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sup>20)</sup> 수탁자책임소송은 단지 ERISA법에 기초한 소송정도차원을 넘어서 연금기금의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의결권행사 여부 등) 등 파생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운용기관 스스로도 소송리스크(법률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인식,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운용기관은 법률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체제(법규준수체제) 확립,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충실, 독자적인 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책정 등을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감독내용 및 특징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ERISA법에 의하면 기업연금의 수탁자를 정의하고 그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인 충실의무,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분산투자의무, 문서준수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표 III-14>참조).<sup>21)</sup>

먼저 충실의무면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여야 하는 의무로 충실의무에 기초, 수탁자는 이익상반행위를 금지<sup>22)</sup>하고 있으며, 둘째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인 1830년 매사추세츠주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연유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주의의무), 즉 『사려분별, 능력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산을 운용하는 때』에 사용하는 주의를 태만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분산투자 및

20) 수탁자책임위반 소송사례로는 일본방직업후생연금기금소송(모기업이 연금기금이사 제소), 동경실업후생연금기금소송(연금이사가 운용기관 제소), Board of Trustee & Callan(연금기금이사회 대 투자컨설턴트) 등을 들 수 있는데 90년대 들어 자산운용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1) 류건식, 「미국기업연금의 운영과 재정제도」, 『사회보장연구 제13권』, 1998, p.142.

22)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는 연금기금자산을 수탁자 개인 계정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문서준수의무(광의로 Prudent Man Rule)인 연금기금의 자산을 신중하게 분산투자하도록 한 분산투자의무(404조(a)(1)(c))와 연금기금이 정한 문서 및 투자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한 문서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III-14> ERISA법상의 수탁자책임규정

구분	내 용
목적	연금제도 그 중에서도 연금자산의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부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명수탁자: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의 책임부여</li> <li>· 신탁수탁자: 보험계약을 제외한 연금기금자산의 운용은 반드시 신탁계약이어야 하는데, 이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독점적 지배권과 책임부여</li> <li>· 투자매니저: 지명수탁자에 임명된 투자고문, 은행, 보험사에서 운용되는 기금자산에 대해 책임부여</li> </ul>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부와 관리비용이외의 유용은 금지</li> <li>·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같은 정도의 문제에 정통하고 있는 수탁자가 동일한 특징과 목적을 가진 사업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의, 기술, 신중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li> <li>· 기금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배제하며, 대규모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할 것을 요구</li> </ul>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행위의 결과로서의 전 손실에 대해 개인적 책임부과</li> <li>·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익의 환원</li> <li>· 금지거래에 대해서는 발생시부터 거래액에 대해 연 5%, 일정기간에 시정한 경우는 100%의 특별세부과</li> </ul>

자료 : 류건식, 「미국기업연금의 운영과 재정제도」, 『사회보장연구』 제13권, 1998., p.142.

따라서 명확하게 연금기금의 문서<sup>23)</sup>로 되어 있는 것을 입수하고자

23) 법률상 어떠한 것이 준수해야 하는 문서에 해당되는지가 분명치 않으나 판례에서는 신탁계약서 및 투자계약서외에 게시문서 및 부속문서 등이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 않았거나 읽고 이해하고자 하지 않으면 수탁자책임위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기업연금의 기금운용에 관여하는 자는 충실의무 및 선의의 주의의무에 의한 수탁자책임이 요구되며 노동성 연금복지급부국이 관할하게 된다. 특히 수탁자의 행위목적이 손해를 불러오거나 불성실하지 않더라도 수탁자가 기울이는 노력이 배타적 목적<sup>24)</sup>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수탁자책임위반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규약형), 기금이사(기금형)에게 업무전반의 충실의무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III-15>참조). 확정기여형 연금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연금운용방법 선정시 주의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를 지는 상대방의 경우 기금이사는 위임계약 상대방에 해당하는 기금, 사용자는 가입자 등이다.

<표 III-15> 연금제도 내부자에 대한 수탁자책임규정(일본)

법 률 (대 상)	후생연금보험법 (후생연금기금)	확정각출 연 금 법 (기업형)	확정급여 기업연금법 (규약형)	확정급여 기업연금법 (기금형)
의 무 자	이사	사용자	사용자	이사
대상업무	적립금 관리운용	전반	전반	전반
일반적 의 무	충실의무 (주무대신 처분준수)	충실의무 (주무대신처분 준수) 운용방법 선정시 전문가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주무대신 처분 준수)
금지 의무	政令 위임	구체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의 무 상대방	기금	가입자 등	가입자 등	기금

자료: 土浪 修(2002), p.106.

24) 배타적 목적(Exclusive Purpose Rule)은 연금기금가입자 및 수익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연금기금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목적임.

확정각출연금법에서는 수탁자책임의 공통규정인 충실의무를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게 부여하였다(<표 III-16>참조).

<표 III-16> 운용기관 등에 대한 수탁자책임규정(일본)

법률 (대상)	확정각출 연금법 (기업형)		확정 급부 기금연금법 (규약형)	확정 급부 기업연금법 (기금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규정방법	법정	법정	법정	법정
의무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신탁, 생보)	운용기관	운용기관 자가운용의 거래상대방
일반적 의무	충실의무 (주무대신 처분준수), 운용방법선 정시 전문가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주무대신 조항 없음)	충실의무 (주무대신 조항 없음)	충실의무 (주무대신 조항 없음)
금지 의무 의무 상대방	구체적으로 규정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가입자 등			기금

자료 : 土浪 修(2002), p.107.

<표 III-17> 가입자보호의무 및 금지행위

가입자의 보호규정	벌칙	행정 처분	민사 책임
가입자에 대한 충실의무(43조, 44조, 99조) 기업,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은 가입자에 대해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의 보호의무(43조, 99조) 기업이나 운영관리기관은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필요 한 범위 내에서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	●
전문적 식견에 기초한 운용상품의 선정(23조, 73조) 운영관리기관은 운용상품의 선정을 하게 될 때 전문적인 신견 에 기초하여 행하여야 한다		●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행위 금지 (43조, 100조) 자기 또는 가입자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업이 운영관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관리기 관이 특정한 운용상품을 제시하면 안된다		●	●
이익보전이나 손실부담금지(100조)	●	●	●
고의로 사실의 미고지 또는 부실고지하는 행위금지(100조)	●	●	●

주 : 행정처분은 기업,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업무개선명령 등을 의미  
자료 : 中島富三, 『確定釀出年金』, 國政情報센터 2002. 8. p.54.

<표 III-18> 수탁자책임 위반시제재조치(주요벌칙)

위반 사항	위반 요건	벌칙 내용
이익보전 손실부담의 금지위반 등	운영관리기관이 업무상 발생한 가입자 등의 손실을 일부라도 전가하거나 직접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가입자의 이익에 추가하는 행위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118조)
계약시 사실미고지의 금지위반 등	운영관리기관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을 고지하는 행위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추징(119조)
보고 징수 위반 등	기업이 후생노동대신에 대해 기업형 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임점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허위진술, 검사거부, 방해, 기피 등을 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120조)
운영개선 명령위반	주무대신은 운영관리기관의 업무에 있어, 가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의 운영개선을 할 수 있는데, 운영관리기관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20만엔 이하의 벌금(1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118조부터 12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됨.	각조의 벌칙 (위반행위자), 각조의 벌금 (법인)(122조)
가입자에의 통지위반	가입자가 이·전직하여 개인별관리자산을 전환하는 경우, 운영관리기관이나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그 가입자에게 전환된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등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123조)
가입자의 제출위반	기업이 기업형연금 가입자의 성명·주소·기타사항을 운영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기업이 기록관련업무 모두를 겸하는 경우 제외) 등	10만엔 이하의 과태료 (124조)

자료 : 中島富三(2002), pp. 55-56.

운영관리기관은 주무대신의 감독을 받으며 자산관리기관은 연금법에 기초한 감독은 없으며, 자산관리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충실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특히 확정기여연금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경우 의무 상대방은 가입자 등이며 확정급여형 운용기관의 경우 가입자 등(규약형), 기금(기금형)이 의무상대방이다.<sup>25)</sup> 일본은 ERISA법 가입자 보호사항 등을 기초로 기업,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에 대해 다양한 책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표 III-17>, <표 III-18>참조)하고 있다.

#### 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등 종업원 보호장치

계약자가 법적으로 책임있는 사람이나 보험가입대상자의 잘못된 행위<sup>26)</sup>로 인해 계약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도입하고 있다. 수탁자가 ERISA의 규정을 위반시 노동부장관, 재무성과 PBGC 등 정부관계뿐만 아니라 종업원, 수급권을 가진 퇴직자, 보험금수취인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연금수급과 직접 관련된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들이 수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경우 수탁자들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탁자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와 분석능력이 있는 정부관계자들이 연금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RISA는 각 연금기금이 전체자산의 10%에 해당하는 ERISA Fidelity Bond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27)</sup>

25) 中島富三, 『確定釀出年金』, 國政情報센터 2002. 8., p.54.

26) 잘못된 행위는 보험증권에 있는 연금관리자 의무수행의 착오나 누락뿐만 아니라 ERISA에서 수탁자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7) 류건식, 「기업연금지급보증제도개선방안」, 『리스크관리연구』, 1999년 가을호, p.241.

Fidelity Bond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부정직으로 인한 연금자산의 손실(예: 횡령, 유용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Fidelity Bond의 경우 수혜자는 종업원, 보증인은 채권구입자, 피보증인은 연금기금이 해당된다.<sup>28)</sup>

<표 III-19>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와 Fidelity Bond의 비교

구분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Fidelity Bond
가입 형태	임의	강제
가입 대상	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 투자매니저	지명수탁자
보험 대상 행위	수탁자의무 불이행 (경영상 오류, 태만, 사무관리착오 및 누락)	부정행위에 의한 자산손실분
보장 한도	보험계약금액	연금자산의 10%

자료 : 류건식, 「기업연금지급보증제도개선방안」, 『리스크관리연구』, 1999년 가을호, p.241.

#### 4.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 가. 재무건전성을 둘러싼 최근환경변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경우 연금기금의 운용 및 규제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연금급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연금기금의 적립상태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종업원퇴직소득보장

28) Fidelity Bond는 기금의 임원, 대의원, 감사 등 지명수탁자의 부정행위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장한도는 기금자산의 10%이다.

법(ERISA)에 의해 최소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s)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지급보증제도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에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에 대하여 최저책임준비금규제(minimum funding rule)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영국은 기본적인 최소적립요건은 95년 연금법에 기금의 자산가치가 기금의 부채규모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및 특징

##### 1) 지급보증체제의 도입 및 구축

###### 가) 미국

###### ① 최소적립요건의 강화에 의한 지급보증확보

1974년 종업원의 연금수급권을 보증하기 위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제정되면서 PBGC와 함께 처음으로 최소적립요건이 도입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PBGC의 재정상태가 계속악화되자 1987년 통합예산균형법(OBRA:Omnibus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여 기금적립에 대한 제도제공자들의 자유재량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소적립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에 걸쳐 미적립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인 위험노출 상당액수가 증가하면서 PBGC의 장기적인 건전성이 위협받게 되자 1994년 퇴직보호법(RPA: Retirement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최소적립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한 지급보증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즉 ERISA는 제도종료보험의 창설 및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등 수급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거액의 적립부족 등으로 PBGC의 재

정이 악화되자 1994년에 기업연금의 적립요건 강화, 제도종료보험의 보험료적정화, PBGC에 의한 기업연금재정의 관여 등 수급권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한 퇴직연금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sup>29)</sup>

## ② PBGC에 의한 지급보증과 제도종료보험제도 도입

미국의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는 연금기금의 재정파탄에 따른 종업원의 지급보증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ERISA제정과 함께 설립된 공사로서 종업원의 연금수급권을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세계적격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강제적으로 PBGC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PBGC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립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끝에 설립당시의 사후적 지급보증중심에서 사전적 지급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지급보증이 기본적으로 중대한 임무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사태에 기금이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더 한층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BGC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급부보증은 연금제도종료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금종결의 절차, 급부의 상한, 변액보험요율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나) 영국

### ① 기업연금감독청(OPRA)의 설립과 수급권강화

영국에서는 종래부터 적용제외제도만을 관할하는 직역연금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업연금감독청(OPRA: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이 창설되었다. OPRA는 포괄적인 감독기관을 설립함으로써

29) 吉原健二, 『21世紀の 企業年金』, 東洋經濟新報社, 平成9年 9月. pp. 243-244.

판례법에 기초한 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탁자의 의무불이행을 저지하고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탁자의 의무이행뿐만 아니라 최저적립기준(최저지불능력 기준)의 충족부터 각종 정보공시규정의 준수에 이르는 세세한 내용까지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직역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고 임명 연금계리인의 보고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직역연금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연금수탁자의 업무정지·해임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괄적인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관할관청간의 이해대립도 회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징세기관인 직역연금사무국(PSO: Pension Scheme Office)은 연금자산의 과잉적립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OPB는 연금수급권의 담보가 되는 연금자산의 충분한 적립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연금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복수의 분산된 관할관청에 의해 적용제의 및 세제적격의 취소행위로 이르게 되고 이는 결국 가입종업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OPRA는 연금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개별적인 벌칙규정을 정하고 특히 상한의 벌칙을 부과하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다.

## ② 적립기금확보차원의 최저적립기준(MFR)적용

최저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은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채용된 것으로, 연금급부채무에 적합한 연금자산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자산이 연금부채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100%까지 적립수준의 인상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연금수리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립수준이 10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이사회는 신규 연금각출계획서를 작성, 임명연금계리인의 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금기금의 재무건전성 검

증프로세스는 ① 3년마다 정기적인 연금수리평가 ② 연금기금으로부터 지명된 임명연금수리인과 수탁자에 의해 간행되는 매년의 연차보고서 ③ 적립수준이 최저적립수준의 100%를 하회하는 경우의 중장기적인 회복조치 및 적립수준이 최저적립기준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의 긴급한 회복조치 등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긴급한 회복조치에서는 즉시적인 현금보전이외에 은행에 의한 채무보증, 용도가 특정된 은행예금 내지 예비자산(cash reserve)보유 등의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 ③ 연금보상제도(PCS)에 의한 지급보증

연금보상제도(PCS: Pension Compensation Scheme)는 주로 모기업의 도산에 의해 연금급부채무의 불이행상태가 발생하고 동시에 연금기금의 자산이 부정유용 및 사기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정한 상한금액까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액·보전액은 부정행위에 의한 상실자산액의 90%상당액, 또는 적립부족액의 90%상당액 중 적은 쪽이다. 나머지 10%는 제도종료·해산에 대한 자기책임액이며, 사전적으로는 위험분배에 의한 도덕적 해이억제기능을 수행한다. 보전방법은 연금보상위원회가 가맹연금기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모기업의 도산리스크 및 제도종료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보증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 다) 일본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자산을 외부에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산시 정리재산의 잔고범위내에서 종업원 및 퇴직자의 수급권보전이 이루어지지만 재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밖에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적격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도퇴직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어 회사도산직전의 인원정리에 수반하여 급부가 대량으로 발생

하여 최후에 도산할 때에는 적립재산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다.

<표 III-20> 주요국 지급보증제도 비교

구분	일본	미국	영국
실시주체	-후생연금기금연 협회 -후생연금기금연합회에 기초한 임의사업(전기 금)	-PBGC(정부관계기관) -ERISA에 근거한 확정 급여형제도를 행하는 기업에 대해 강제적용	-연금보상위원회(PCB)
보증사유	부득이한 해산에 적용	-PBGC에 의한 강제종 료시 ·현재연금급부를 위한 자산이 없는 경우 -임의종료시 ·파산사업유지곤란	-사기 등의 부정행위에 기인하는 해산에 적용 -단, 당해기업의 모기업 이 도산하여 채무불이 행에 있다는 전제조건 이 필요
보증범위 및 수준	- 적은쪽이 상한 ① 최저책임준비금1.3배 ② 해산시 책임준비금	-다음 중 적은 쪽이 상 한 ① 고정액 ② 고용 기간 중 5년간 평균보수월액 중 가 장 높은 금액	- 적은 쪽이 상한 ① 사기 등에 의해 상실 한 자산의 90%상당액 ② 적립부족의 90%상당 액
구상권 등	-기금운영이 부적정한 경우 등에는 감액	-PBGC가 강제종료한 기업에 대해 미적립급 부채무를 구상 -강제종료는 사법절차경 유	
비용부담	가입원 등×약260엔+지 급보증한도액×0.008%+ 미적립채무액×0.11% 단, 상한 및 경과조치 유	가입원수×19달러+적립 부족액×0.9%(1994년)	비용은 사후적으로 연 금기금이 부담
부담업무	-연도별 적립상황 검증 -후생연금기금연합회는 적립부족기금에 대해 전 체 순위 통지	- 적립률 60% 이하 시 PBGC가 기업에 적립부 족분추가각출요구(적립 수준은 PBGC가 규정하 는 예정이율 및 예정사 망률 사용) -적립부족상태인 기업 은 정기적 재무정보보 고의무화	

자료 : 류건식,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수급권보호제도 정립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4권』, 1998. 12. p.221.

후생연금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그 대행부분은 후생연금보험법 제85조 2의 규정에 의해 책임준비금(최저책임준비금)을 후생연금기금연합회

에 납부하고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기금의 가입원이었던 자에게 대항상당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지급개시연령은 기금 규정에서 정한 지급개시연령이 아니라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되므로 급부액의 수준은 보증되지만 지급개시연령까지를 포함한 수급권의 완전한 보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후생연금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그 플러스알파부분에 대해서는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지급보증의 보험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금의 각출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부를 보증하지만 그 보증액은 최저책임준비금의 30%로 매우 한정적인데, 이는 1989년 전기금이 참가한 임의의 공제사업으로서 창설되었으며 1996년 2월에 최초의 보증급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급권보호관점에서 임의가입제도인 지급보증제도를 미국이나 영국처럼 보험사고에 입각한 강제가입성격인 공적지급보증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표 III-21> 지급보증제도의 운용형태비교

구 분	미국	영국	일본
보증대상	모든기금의 해산	부정행위에 의한 해산	후생연금기금의 +a
보증한도	최고한도 설정	Min { 손실 자산의 90%, 적립부족의 90% }	최저책임준비금의 30%
재원충당	제도종료보험의 보험료운용수익, 구상권행사한 자산	사후적으로 전직역연금에 부과	전기금의 각출

## 2) 연금재정검증체제의 구축

### 가) 연금계리사 등에 의한 재정감시기능강화

미국에서는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수리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국세청 및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세청 및 노동부에서 정해진 원칙에 의해 샘플을 추출하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중요한 검토항목이며, 통상 연금계리사에 의한 검증절차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III-22> 선진국의 연금계리사 제도 및 역할

구분	미국	영국	일본
유형	연금계리사	연금계리사	연금계리사 (연금수리인)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재정건전성 검증</li> <li>- 회계감사에 의견 반영</li> <li>- 감독정책에 간접 관여</li> <li>- 연금투자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재정건전성 검증</li> <li>- 제3자 감독기능의 역할</li> <li>- 회계감사에 의견 반영</li> <li>- 연금투자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재정건전성 검증</li> <li>- 후생연금기금 재정 추계</li> <li>- 회계감사에 의견 반영(간접적)</li> </ul>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을 부적정하게 적립하였을 경우에 결산 감사의 견이 부적정하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제도에 의해서 간접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퇴직연금의 재정검증을 위해 산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등에서 연금계리사 등을 고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금계리사는 1995년 연금법 제48조에 의해 연금감시자로서 역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연금기금의 재정을 상시 체크하여 연금재정악화를 조기발견,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OPRA)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연금계리사 등으로 구성된 OPRA는 수탁자의 해임 및 업무정지, 운영이 부적절한 퇴직연금에 대해 해산 또는 개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즉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연금계리사 등이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OPRA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즉시 서면보고토록 하고 있다.

일본 또한 후생연금기금 재정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금계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계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기금이 후생대신에게 제출하는 연금수리에 관한 서류에는 적정한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연금계리사가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다.

## 나) 급부보증의 구조

### ① 제도의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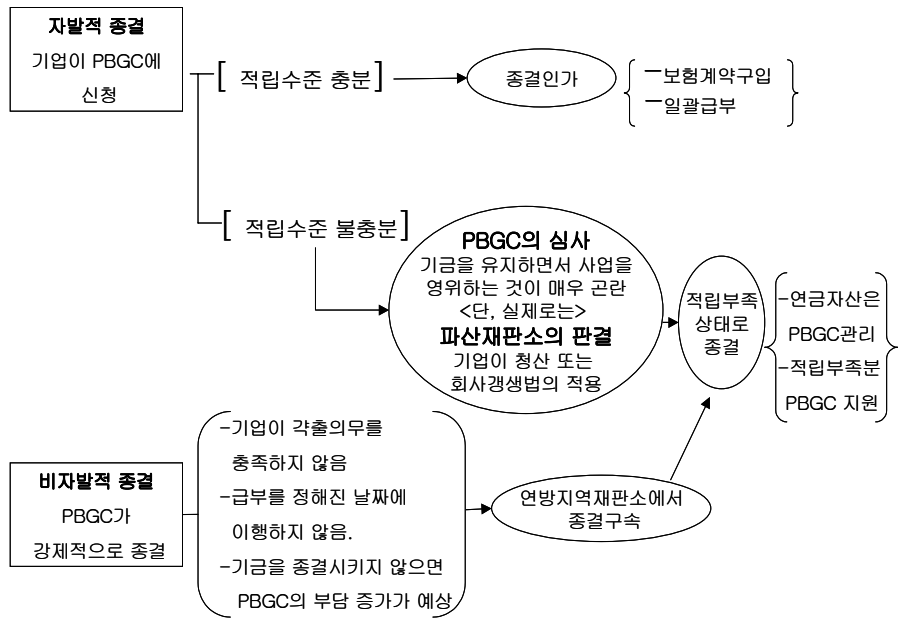
연금기금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기업 스스로가 원하여 행하는 종결이 자발적 종결이다. 다만 기업은 그 취지를 PBGC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금이 적립부족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종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발적 종결의 절차를 요약·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자발적 종결에는 적립수준이 충분한 경우와 적립부족에 빠져있는 경우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PBGC의 연금급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만, 기업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PBGC가 적립충분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추가각출의무에서의 ABO라는 점이며, 더욱이 PBGC가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금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즉 그만큼 ABO는 큰 금액이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기금이 적립부족인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업이 신청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기금의 계속이 기업전체에 중대한 부담을 주어 결국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PBGC를 설득하거나 또는 파산재판소로부터 도산을 선언받는 절차가 요구된다. 즉 기금운영의 부담이 기업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적립부족기금의 종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림 III-1> 퇴직연금제도의 자발적 종결과 비자발적 종결



반면에 PBGC가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기금을 종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비자발적 종결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는 기금을 그대로 존속시키더라도 기금에의 각출이 부담이 되어 도산 등의 우

려가 있으며, 더욱이 그때까지 기다린다하더라도 보증해야 하는 급부액이 커진다고 PBGC가 판단한 경우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자발적·비자발적인 것에 상관없이 적립부족인 기금이 종결되는 것은 기업의 도산 또는 그것에 유사한 사정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② 급부보증의 상한

기금이 자발적·비자발적인 것에 상관없이 적립부족에 빠진 채 종결되는 경우 종업원이 보증받는 연금은 원칙적으로 그 종업원이 그 시점에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과 같다. 그러나 상당히 고액의 연금 급부가 약속되어 있는 경우 PBGC가 그 전액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즉 PBGC가 보증하는 연금급부액에는 상한이 있으며, 1996년에 종결한 기금의 경우 1인당 월 약 2,600달러(또는 연간 약 31,704달러)이다. 인계한 연금급부의 지급은 PBGC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지만 사무처리 등은 민간업자에게 아웃소싱한다. 최근에는 소비자서비스센터(customer service center)를 설립하여 무료로 전화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전달도 이루어져 수급자편익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③ 보험료의 징수

PBGC의 급부보증재원이 되는 것은 다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및 그 운용수익이다. 둘째, PBGC가 급부의무를 인계한 기금이 그 당시까지 적립하고 있던 자산이다. 셋째, 종결한 기금을 주관하는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산 및 그 운용수익이다. 보험료에는 정액보험료와 함께 적립부족 수준에 따라 변하는 보험료가 있다.

보험료는 ERISA 제정시인 1974년부터 1987년까지는 가입자 1인당 고정금액만을 징수하는 인두세방식이었으며, 그 수준도 10달러면 충분

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1988년에 정액부분은 약 2배인 16달러로 인상됨과 더불어 변동부분이 추가되었다. 보험료의 인상은 그후에도 이루어져 1996년 6월부터 1인당 보험료상한까지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액의 적립부족을 지닌 기금을 가진 기업의 보험료부담은 가중되었다. 정액부분의 인상배경에는 1980년대 중반에 연이은 기금파탄에 의한 PBGC재정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으며, 변액부분의 도입은 단순히 보험료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적립부족 기금에 의한 도덕적 해이(적립수준이 충분한 기금에의 편승)의 방지 및 적립부족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감시강화에 의한 파탄 방지

PBGC는 최근 기금의 운영동향을 감시하고 적립수준의 대폭적인 악화 및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업무중심을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들어 도입된 조기경보프로그램 및 적립부족 Worst 50리스트 등을 들 수 있다.

##### ① 조기경보프로그램

연금기금의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기금의 적립부족액이 지나치게 큰 기업을 추출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시정책을 요구하는 조기경보프로그램을 1990년대에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GM사에 의한 사회사주식의 각출과 같은 경우에서 처럼 사회사의 연금기금이 적립부족에 빠져 있는 경우 모회사가 그 사회사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가 등도 감시하게 된다. 이는 사회사 매각후에 적립부족에 빠져있는 기금의 건전성확보에 대해 모회사와 매각 상대방의 어느 쪽이 최종책임을 지는 가가 애매하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표 III-23> 조기경보프로그램의 발동사례

기 업	배 경	PBGC의 움직임
New Valley Corp. 금 융 업	New Valley는 91년 11월 회사경쟁법 신청, 사업 재 건 과 정 에 서 자 회 사 Western Union 매각 희망, Western Union의 기금이 91년말 현재 16,000명의 가입자를 포함. 4억 달러의 적립부족 상태	PBGC는 자회사 매각 결과, 적립부족 기금에 대한 책임이 New Valley와 매수선 사이에서 불명확하게 될 것을 우려, 매각 실시 전에 기금을 강제적으로 종결시켜 Western Union의 자산접수에 나설 것을 통고 ↓ Western Union의 매수선 First Financial Management Corp.는 95년 동사가 기금을 인수하는데 동의. 그후 기금에 대해 1억 9,900만 달러의 각출을 행함
Trans World Airlines (TWA) 항 공 운 수 업	TWA는 92년 1월 회사 경쟁법 신청. 동년 12월 현재 두 개의 기금에서 합계 10억 달러의 적립부족 상태	PBGC는 TWA 및 이전 소유자인 C. Icahn씨와 교섭 ↓ 93년 초에 합의에 도달. TWA는 3억달러의 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기금에 각출하기로 함. 이 증권의 이자지불과 Icahn씨의 소유기업의 자금으로 TWA의 각출의무를 달성
Worldward & Lothrop Holdings 소 매 업	W&L은 94년 1월 회사 경쟁법 신청. 동사의 기금은 그 시점에 10,000명의 가입자를 포함, 3,000만달러의 적립부족 상태	PBGC는 동사의 사업재건의 진행되고, 연금기금의 유지에 필요한 가입자수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동사와 교섭 ↓ 사장겸 1대 주주인 A. Taubman씨와 95년 합의에 도달, 관계자 1개사가 김금에 계속 각출하고, 다른 관계자가 그 각출을 보증하기로 함, 적립부족 해소 후 W&L은 기금을 종결하고 가입자에게 일괄급부 또는 보험회사의 연금을 제공함
James River 종 이 제 품 제 조 업	James River는 통신지부분에서 철수하고 Crown Vantage를 신회사로 설립하고자 계획. 신회사의 사원 8,000명이 가입하는 12개 기금은 합계 5,500만달러의 적립부족 상태	PBGC는 신회사의 기금이 적립부족이라면 책임소재가 James River와 신회사 사이에서 불명확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James River와 교섭 ↓ 95년 James River가 12개의 기금 모두에 대해 스스로 스폰서를 계속하던가 신회사의 각출부족분의 책임을 지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합의

자료 : PBGC Annual Report에서 작성

프로그램을 충실화하기 위해 PBGC는 공개정보를 이용하는 이외에 PWBA(Pension Welfare Benefits Administration) 및 IRS(Internal Revenue Service), SEC 등 정부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므로 200명이 넘는 변호사·연금계리사·공인회계사·재무분석사를 스태프로 채용하고 또한 외부의 금융서비스업자에게도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PBGC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이 관찰되면 그 기업의 상층부(GM의 경우 CFO)와 회합을 가지고 추가각출 등을 교섭하는데,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확실적인 규정은 없으며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래 모든 기업은 최저각출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연금급부를 결정된 계획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매수·합병 등 기타 기금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기금의 종결과 연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PBGC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와 같은 조기정보프로그램은 PBGC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적립부족 Worst 50 리스트

PBGC는 1990년부터 매년 연금기금의 적립부족(절대액이 아니고 적립비율)이 워스트 50에 들어가는 기업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 게재되는 것 자체는 기업이미지 악화이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리스트는 주요한 언론매체에 보도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기재된 기업의 종업원 및 퇴직자들이 동요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리스트가 발표되기 이전에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각출하면 되는 가를 문의하고 있어 PBGC가 의도한 적립부족에 대한 기업측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라) 지급능력비율제도의 도입 등

영국 등의 감독기관은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이때 연금운용기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정평가원칙을 공시함으로써 감독관리 및 규제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척도로서 기업연금의 지급능력비율(Solvency Ratio) 또는 기금적립비율 등이 도입되고 있다. 지급능력비율의 도입은 비율단계별로 명확한 감독규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감독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일관성있는 감독관리 및 감독규제강도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능력의 최저허용수준과 최대허용수준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최대허용수준의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금이 퇴직연금제도상 유인책으로 부여된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등 세제혜택의 이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최대허용수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과잉지급능력(excessive solvenc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

### 1.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 가.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4장 제11조 6항부터 제11조 8항에 잘 나타나 있다.

<표 IV-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자산운용관련사항

구분	자산운용관련 사항(규약상)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조6항)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정을 통하여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함
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1조7항)	-매반기 1회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금보장방법을 포함하여 3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그밖에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가입자에게 매년 1회이상 적립금의 운용결과, 운용방법, 그밖에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것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 (11조8항)	-이 경우 가입자에게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될 것

특히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1조 7항(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제시되어 있다. 제11

조 7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매반기 1회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금보장방법을 포함, 3회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영미식보다는 일본식을 보다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②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함으로써 일정한 양적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규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제11조 8항(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에서 보듯이 노동부장관에게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연금자산운용상황에 대한 감독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자산 운용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체계

### 1)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하면 책무로 ① 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③ 정부의 책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표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가입자 교육의무(필요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실시위탁가능)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입자는 ① 자기 또는 가입자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2> 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구 분	수탁자책임관련 사항	관련근거
사용자	근로자 교육실시의무	제19조 (사용자의 책무)
	금지의무 · 근로자이익상반행위 금지 ·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 운영저해 금지	
퇴직연금 사 업 자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자산관리계약체결 거부금지	
	가입자손실보전금지	
	특별이익제공금지	
	가입자정보제공금지 특정한 운용방법제시금지	
정 부	세계 등 지원방안강구의무	제21조 (정부의 책무)

#### 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운용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② 퇴직연금 취급실적 제출의무, ③ 이익제공 사전약속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범위의 취득 정보 사용금지의무, 특정운용방법 제시금지의무가 존재한다. 업무범위의 취득 정보사용금지의무는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특정운용방법제시금지의무는 자기 또는 가입자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 다) 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정부 각각에 대한 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2) 퇴직연금 감독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하면 감독유형은 크게 ① 보고 및 조사 ②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③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④ 업무의 협조 ⑤ 권한의 위임·위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V-3>참조).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감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주요한 감독유형(체계)를 보면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법 제26조에서 규정한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등이라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종결에 관한 내용이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종결과 비자발적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는 사용자의 부담금미납부 및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의 폐지시 중단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종결에 대한 기준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 제 28조에는 권한(노동부장관)의 일부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국 등과 달리 주무 감독기관은 노동부, 간접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IV-3&gt; 근로자퇴직소득법령상의 퇴직연금 감독사항

구분	수탁자책임관련 사항(감독)		관련근거
보고 및 조사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의 출석을 요구		법 제22조
	기업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		
시정 조치	사용자	사용자가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23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 명령	
	퇴직연금사업자	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24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명령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사용자의 부담금미납부 또는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중단이후의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근로자에 지급		법 제26조
업무협조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자료요청가능		법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탁가능		법 제28조

### 가) 사용자에게 대한 감독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수하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할 수 있는 보고 및 질문·조사권이 존재한다. 또한 노동부장관에게는 사용자의 퇴직연금설정·운영이 법령, 규약 또는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위반시정·개선명령권이 존재하며, 특히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시정 또는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퇴직연금운영정지 명령권이 존재하고 있다.

#### 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노동부장관에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되거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시정·개선명령권이 존재하며,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취급정지 또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는 퇴직연금취급정지권, 계약이전명령권이 존재하고 있다.

#### 다) 벌칙

사용자의 책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sup>30)</sup>. 이와 같은 과태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체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감독체계를 요약·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에는 크게 ① 퇴직금의 우선변제 ② 퇴직금의 지급 ③ 규약상의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④ 수급권 보호 등과 같이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사용자의 도산, 수탁기관의 도산 등에 의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채 규정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

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32조

는 점이다. 특히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을 보면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및 저당권 다음으로 우선변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PBGC에 의한 수급권보호와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관련 규정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관련사항

구분	재무건전성관련 사항	관련근거	
퇴직금의 우선변제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	법 제9조 1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법 제9조 2항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법 제7조	
규약	확정급여형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말 적립해야 할 적립금 수준 명시	법 제10조 4항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명시	법 제10조 5항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법 제11조 5항 가목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9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급여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과 탈퇴일시금이 포함될 것	법 제11조 11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	법 제11조 1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	법 제12조	
수급권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및 담보제공불가	법 제25조	

## 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특징 및 과제

### 가.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 측면

아직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이 확정된 것도 아닌 시안 단계인 만큼 선진국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와 직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문제점(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를 보면 개괄적인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행 법상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대통령령에 의하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을 보다 세부적으로 최소분산투자규제, 자기투자규제, 총량규제, 의결권제한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제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에는 단지 주식 등 위험자산의 운용방법과 비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각론이라 할 수 있는 세부규제사항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제재조치 사항 등에 대해 명문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가 계약형 지배구조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의 규제감독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의 규제감독,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하에의 규제감독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제도별 규제감독의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에 따른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이 뚜렷하게 대비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 유형별에 따른 규제감독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수탁기관(운용기관)의 운용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독지침 및 감독규정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수탁기관의 운용관리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본지침마련이 법상 또는 시행령 등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여섯째, 운용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대리인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탁기관 평가기준 또는 평가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법상에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자산운용관련 투자감독체계가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국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연기금 자산평가<sup>31)</sup>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형 지배구조 형태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될 것인 만큼 자산 평가는 일반적인 금융 자산의 평가 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금융 자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OECD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자산 운용의 안정성 도모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제한을 허용하되, 특정 자산의 투자를 장려하는 형태이거나 자산 운용자의 능력을 제약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에서 아직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

31) OECD가이드라인에서는 연기금 자산 평가에 대해 공개적이고 일관성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시가 또는 공정가치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OECD 가이드라인은 자산 운용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 수정 및 운용상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투자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투자정책의 목표, 자산·부채 매칭,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투자 정책의 수정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수탁자책임 규제감독체계 측면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상에서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금자산운용의 오류 및 실패에 따른 기업 연금의 지급보증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운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탁자와 관련된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탁자가 수탁기관을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선정하지 않고 조직내부의 이해관계 및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탁자책임문제는 존재하게 된다. 특히 향후 신탁형 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책임문제가 연금재정의 안전성과 지급보증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결국 현행 퇴직연금체계하에서는 연고주의적 거래형태를 탈피하여 퇴직연금제도본래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자(수탁자)들의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온정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자산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금기금을 총괄하는 수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충실의무 등 여러 자기책임의무를 강

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수탁자책임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에 의한 지급보증이 확보되도록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대책방안수립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이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한 책임범위, 제재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제재조치면에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획일적으로 물리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감독 차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 다. 재무건전성 측면

현행 예금자보호법상에서는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어 수탁기관도산시 종업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자산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도산시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됨으로써 퇴직보험의 본래목적인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은행 1인당 5000만원이라는 타예금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의 경우 타예금처럼 여러은행에 5000만원씩 분산예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예금의 예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에 비하여 퇴직연금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예치되기 때문에 예금사고발생의 리스크가 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납입보험료와 운용수익을 연금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운용수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은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에는 미국 등과 같은 연금급부 보증공사의 설립문제 및 최소책임준비금규제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사용자 도산시 종업원에 대한 충분한 수급권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업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사용자 도산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금계리사제도의 도입 등 연금재정의 건전성 검증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보다 구체화됨으로써 상시적으로 연금재정의 적정성을 검증·확인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연금ALM 기법의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규정의 제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3.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상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의 규정을 살펴볼 때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들은 향후 법안의 수정과정에서, 그리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은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 정합성에 가능한 한 부합되도록 체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제3자적 감시기능차원에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체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감독은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차원에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

와 같이 미국 등은 선진국에서는 규제감독상에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규제완화의 보완조치강화, 충실한 지급보증체제 구축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 V.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 1. 설문조사대상 및 설문조사내용

#### 가. 설문조사대상

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을 지난 2003년 10월에 입법예고함으로써 늦어도 2005년 2월이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는 구체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규제감독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방안은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반영될 규제감독은 무엇보다도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즉 사용자, 종업원, 수탁기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한 축을 이루는 수탁기관입장에서의 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방향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 대표적인 수탁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제도 담당자(기존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담당자포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2004년 2월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회사중 생명보험사 12개사, 손해보험사 10개사 등 총 22개 보험회사로 하였다. 손해보험사는 외국 손해보험사를 배제한 반면, 생명보험사에는 외국 생명보험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 손해보험사의 경

우 외국 생명보험사에 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매우 소극적 답변과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표 V-1> 분석 대상

구분	세부 내용		특징
조사대상	보험회사 (22개사)	생명보험	12개사 (외국생보사포함)
		손해보험	10개사 (외국손보사포함)
조사기간	2004. 2. 16~2. 28		-

설문조사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방법은 각 보험회사의 퇴직연금담당자 중 책임자급 이상이 직접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는 사전에 설문지 배포 후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만 설문지 응답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화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 나. 설문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범주별로 분류하면 ①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사항 ②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③ 수탁자 책임관련 규제감독 사항 ④ 재무건전성 관련(수급권보호) 규제감독사항 ⑤ 기타 규제감독사항 등 5개부문이다.

각 항목별 세부문항 구성은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 사항이 26.7%(8문항)으로 가장 많고, 연금자산 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이 각각 20.0%(6문항),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이 23.3%

(7문항), 기타규제감독사항이 10.0%(3문항)를 차지하고 있다.

<표 V-2> 설문문항의 항목별 분류

구 분	문항수	비중 (%)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 사항	8	26.7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6	20.0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7	23.3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6	20.0
기타 규제감독사항	3	10.0
전 체	30	100.0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학자들마다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분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연금운용의 프로우상에서 볼 때, 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운용시 나타나는 책임과 권리는 무엇이며, 수탁기관 등이 도산하는 경우 종업원의 수급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문항을 작성하게 되었다.

규제감독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항은 5점척도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규제감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규제감독의 지향성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인식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5점척도 방식이 다소 유용하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각 부문의 세부문항 설정은 정형화된 문항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부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문항만을 설정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2. 설문조사 분석결과

### 가.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 사항

#### 1) 퇴직연금규제감독의 방향성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적 규제감독방향은 크게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수익성중시 규제감독과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중시 규제감독, 안전성중시 규제감독 중 어느 규제감독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부는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규제감독방향을 지향하는지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4개중 3개사가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형 생명보험사는 8개사는 7개사가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퇴직연금규제감독의 방향성 여부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수익성 중시 규 제 감 독	1	1	1	1	2	2	18.2
안전성 중시 규 제 감 독	3	7	4	4	7	11	81.8

손해보험사의 경우 역시 대형손해보험사는 5개사중 4개사가, 중소형 손해보험사는 5개사중 4개사가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함으로써 손해보험사 전체적으로 80%의 안전성중시 규제감독 선호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보험회사중 18.2%인 4개사만이 수익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할 뿐, 81.8%인 18개사는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함으로써 80%이상의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전환에 따른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의 기본방향으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 보험회사가 수탁기관으로 진출하는 경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12개 생명보험사중 31.8%에 해당하는 7개사가 높은 관리비용을 1위 진출장애요인으로 보았으며, 2위는 22.7%인 5개사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3위는 18.2%인 4개사가 제도와 번번한 비즈니스상의 사정을, 제4위는 13.6%인 3개사가 복잡한 연금수리비용을 진출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복수응답) 높은 관리비용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최대의 진출장애요인으로 각각 12개사(1위+2위)가 지적함으로써 향후 보험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연금설계를 위한 시스템개발, 연금상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관리비용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재무건전성강화 등 정부의 지나친 감독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생명보험사는 12개 생명보험사중 6개사가 높은 관리비용을 가장 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는 10개 손해보험사중 4개사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가장 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6개 생명보험사가 높은 관리비용을 진출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시스템개발비용 등 많은 인프라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되었다고 생각된다.

&lt;표 V-4&gt;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정부의 지나친 규제	1	5	4	2	22.7(2)	31.8(1)
높은 관리비용	6	1	1	4	31.8(1)	22.7(2)
복잡한 연금수리적용	1	1	2	3	13.6(4)	18.2(3)
제도와 빈번한 비즈니스상의 사정	3	1	1	1	18.2(3)	9.1(4)
법령준수를 위한 비용증대	1	1	1	0	9.1(5)	4.5(5)
빈번한 법령증대	0	2	1	0	4.5(6)	9.1(4)
기타	0	1	0	0	0.0(7)	4.5(5)

### 3) 제도도입초기의 지배구조선호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신탁제도에 대한 노사인식부족으로 영미식 지배구조보다는 단순한 계약형 지배구조가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값 4.14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대형 생명보험사보다도 중소형 생명보험사가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는 중소형 손해보험사보다도 대형 손해보험사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영미식 지배구조보다 계약형태가 단순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보다 선호하는 것은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국내 금융시장과 외국 금융시장과의 구조차이 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V-5> 제도도입초기의 지배구조 선호도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영미식보다 단순한 계약형 지배구조가 바람직	4.14	3.75	4.16	4.60	4.00

4) DC형 대비 DB형 퇴직연금 규제강도

신중한 투자자원칙이 적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오히려 엄격한 투자규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생명보험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엄격한 투자규제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생명보험사중 대형 생명보험사의 평균값은 3.00이고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평균값은 3.25이어서 전체 보험회사 평균값 3.4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6> DC형 대비 DB형 퇴직연금 투자강도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DC형 보다 DB형은 엄격한 규제가 요구	3.41	3.00	3.25	3.60	3.80

제일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그룹은 중소형 손해보험사 그룹으로 대형 생명보험사 그룹 평균값 3.00, 중소형 생명보험사 평균값 3.25, 대형 손해보험사그룹 평균값 3.6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 3.80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제도초기 규제형태의 선호도여부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기금운용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양적

규제가 질적규제보다 바람직한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생명보험사, 중소형 생명보험사, 대형손해보험사, 중소형 손해보험사가 각각 3.75, 3.38, 3.60, 3.20의 평균값을 보여, 손해보험사에 비해 생명보험사, 중소형 보험회사에 비해 대형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질적규제보다는 양적규제를 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보험회사의 평균값은 3.45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적규제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지 못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투자규제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표 V-7> 질적규제와 양적규제의 선호도여부

변 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제도도입초기에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양적규제가 바람직	3.45	3.75	3.38	3.60	3.20

#### 6) 연금투자규제의 방향성

연금투자규제의 방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점진적으로 연금규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모두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 즉 네거티브시스템 투자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 및 대형 손해보험사의 평균값이 각각 4.50 및 4.80으로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평균값 4.38, 중소형 손해보험사의 평균값 4.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형보험회사가 중소형 보험회사 보다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더욱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8> 연금투자규제의 방향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점진적으로 연금투자자는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4.50	4.50	4.38	4.80	4.40

따라서 수탁기관인 보험회사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연금투자자의 규제방향은 단기적으로 양적규제를 기초로 하되, 장기적으로 질적규제로 전환하여 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7) 연금운용투명성차원에서 연금회계기준제정필요성

미국에서는 1987년 연금회계처리기준(SFAS 87)을 제정하여 연금비용의 계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등을 통해 연금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금회계처리기준의 마련은 연금부채의 평가를 통해 연금자산운용을 유도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의 자산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보험회사 전체 평균값이 4.27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연금회계기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t;표 V-9&gt; 연금회계기준제정의 인식여부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수탁기관 위험관리 연금운용투명성 차원에서 연금회계기준제정이 필요	4.27	4.50	4.12	4.60	4.00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그룹,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 등 타그룹보다도 대형 손해보험사 그룹의 평균값이 4.60으로 가장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대형보험회사가 중소형보험회사보다 제정의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연기금 위험관리체제의 선호도

자산중시의 리스크관리체제에서 잉여금(부채)중시의 리스크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대형 생명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중소형 손해보험사 그룹의 평균값이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및 대형 손해보험사 그룹의 평균값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보험회사의 경우 평균값은 3.95로 나타나 잉여금중시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t;표 V-10&gt; 연기금 위험관리체제의 선호도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자산중시 리스크관리체제 에서 잉여금중시 리스크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요구	3.95	4.25	3.88	3.80	4.00

## 나.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이제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방향을 연금운용의 프로우상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감독사항, 재무건전성관련 규제사항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에 대한 설문조사항목을 총 6개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V-11>과 같다.

<표 V-11>에서 보면 법규상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규제가 바람직한가(B-1)하는 질문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3.40의 전체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질문(변수)은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B-6)으로 전체 평균값 4.37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 결과, 변수 6개의 전체 평균값은 4.01을 나타내고 있어 보험회사의 규제감독방향은 전반적으로 설문에서 요구하는 규제감독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변수 B-1(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에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타그룹보다 가장 낮은 평균값 3.00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낮은 평균값은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3.20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보험회사보다 중소형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변수 B-2(원칙적으로 사용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에서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모두 4.0이상의 평균값을 보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lt;표 V-11&gt;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변 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분산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B-1)	3.40	4.00	3.00	3.40	3.20
원칙적으로 사용주(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B-2)	4.20	4.00	4.00	4.40	4.40
연금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B-3)	3.73	3.75	3.38	4.20	3.60
제도초기에는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B-4)	4.17	4.75	3.75	4.80	3.40
근로자금융상품지식증대, 금융시장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존재(B-5)	4.18	4.50	4.00	4.00	4.20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이 유도하도록 감독당국이 적극 독려할 필요성존재(B-6)	4.37	4.50	4.00	4.80	4.20
전 체	4.01	4.25	3.69	4.27	3.83

③ 변수 B-3(연금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에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가장 낮은 평균값 3.38을, 대형 손해보험사그룹이 가장 높은 평균값 4.20을 보여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타그룹이 비해 상대적으로 총량규제를 시현하는 데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변수 B-4(제도초기에는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에서는 변수 B-3과 마찬가지로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타그룹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값 3.75를 나타내고 있다 ⑤ 변수 B-5(근로자금융상품지식증대, 금융시장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및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존재) 및 B-6(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도록 감독당국이 적극 독려할 필요성 존재) 모두 전그룹이 4.0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 다.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수탁자책임관련 설문조사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V-12>와 같다. <표 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의 평균값이 3.64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평균값 4.16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수 C-1(DC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의 명확화가 요구), C-2(사용자, 수탁기관 등 연금금 운용 관련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구체화필요), C-4(종업원정보제공충실, 서류관리·문서명확화, 수탁기관 자체적인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책정에 대한 독려필요), C-5(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 등은 평균값이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규제감독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변수별, 그룹별로 살펴보면 각 변수간, 그룹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먼저 변수 C-1, C-2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사그룹,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대형손해보험사그룹, 중소형 손해보험사 그룹간 차이가 매우 미미한 반면, 변수 C-4의 경우에는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이 평균값 3.64에 훨씬 못미치는 3.00의 평균값이 보이지만 대형 손해

보험사는 4.20의 높은 평균값을 보여 양그룹간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수 C-4에서는 타그룹이 4.0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형 생명보험사 그룹이 3.75라는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V-12>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변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DC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가 요구됨(C-1)	4.06	4.00	4.25	4.00	4.00
사용자, 수탁기관등 연기금 운용관련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제 제재조치 구체화 필요(C-2)	4.05	4.00	4.00	4.00	4.20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C-3)	3.64	3.75	3.00	4.20	3.60
종업원정보제공충실, 서류관리·문서명확화, 수탁기관자체적인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 책정 독려필요(C-4)	4.02	3.75	4.13	4.20	4.00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기준마련(C-5)	4.09	4.50	3.88	4.00	4.00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설정(C-6)	4.16	4.25	4.00	4.20	4.20
전체	3.99	4.04	3.88	4.10	4.02

전체적으로 5개 변수의 평균값은 3.99로 평균이상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경우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수탁자책임의 가이드라인 설정, 투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V-13> 수탁자책임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적정성여부

변 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높은 편이다	2	4	2	0	4	4	36.4
적정하다	2	4	2	4	4	8	54.5
낮은편이다	0	0	1	1	1	1	9.1

다음으로 수탁자 책임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보험회사가 36.4%인 8개사,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보험회사가 54.5%인 12개사,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보험회사가 9.1%인 2개사 등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표 V-13>참조). 즉 5천만원이상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에 따라 제도적 관점에서는 수탁자책임의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수탁자책임위반시의 과태료 부과는 낮게 설정되기를 원해 향후 5천만원이상의 과태료 부과규정은 보험회사측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과태료 규정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가 과반수를 넘는 54.5%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라.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표 V-14>참조), 변수 D-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에 대한 평균값이 3.49로 변수D-2(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 변수

D-2-1(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제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존재), 변수 D-5(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표 V-14>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변 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제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D-2)	3.96	4.00	4.25	3.60	4.00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제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필요성존재(D-2-1)	4.01	4.00	4.25	3.80	4.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제9조1항 및 제9조2항)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D-4)	3.49	4.25	3.50	3.20	3.00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D-5)	3.96	4.50	3.75	4.60	3.00
전 체	3.86	4.19	3.94	3.80	3.50

변수 D-2, 변수 D-2-1의 경우는 평균값이 대략 4.0 수준인데 특징적인 것은 타그룹보다 대형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3.0 대라는 점이다. 특히 변수 D-4의 경우 생명보험사에 비해 손해보험사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대형 손해보험사그룹과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각각 3.20과 3.00의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변수 D-5의 경우 전체 평균값은 3.96인데 반하여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과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각각 3.75 및 3.00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

어 중소형 보험회사의 평균값이 대형 보험회사의 평균값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차원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표 V-14>참조), 미국 PBGC식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총 22개 보험회사 중 59.1%에 해당하는 13개 보험회사가 선호하고 있는 반면, 최소책임준비금제도 도입은 총 22개 보험회사 중 40.9%에 해당하는 9개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있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수급권보호장치 마련을 보다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형 보험회사 9개사 중 대부분인 8개사가 미국 PBGC식 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전체 13개사 중 8개사는 미국 PBGC식 지급보증제도도입 보다는 오히려 최소책임준비금제도 도입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V-15> 지급보증제도유형의 선호도

변 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최소 책임준비금제도	0	5	1	3	1	8	40.9
PBGC식 지급보증제도	4	3	4	2	8	5	59.1

다음으로 수탁기관 도산시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장치로 설정되어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5천만원 한도에 대한 적합성(적정성)여부를 질문한 결과, <표 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22개 보험회사중 45.4%에 해당하는 10개 보험회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V-16&gt; 예금자보호법 규정의 적합성 여부

변 수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비율 (%)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적정하다	2	3	2	3	4	6	45.4
5천만원~ 1억원 적당	2	3	3	0	5	3	36.4
1억원~ 1억5천만원적당	0	1	0	1	0	2	9.5
1억5천만원 이상 적당	0	1	0	1	0	2	9.5

따라서 5천만원 한도가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장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36.4%인 8개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이내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9.5%인 2개사, 1억 5천만원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보험회사는 9.5%인 2개사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회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를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마. 기타규제감독사항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에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복수의 자산관리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의 업무전문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연금재정의 감독체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영국의 퇴직연금감독기구(OPRA) 등과 같이 독립된 감독기

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보험회사의 평균값이 3.31인 것으로 나타나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은 평균값이 2.00이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V-17> 기타 규제감독사항 설문조사분석결과

변 수	평균값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형	중소형	대형	중소형
퇴직연금제도에 한해, 보험사에게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모색필요(E-1)	4.50	5.00	4.50	5.00	3.80
영국 OPRA 등과 같은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존재(E-2)	3.31	3.50	4.13	3.60	2.00
운영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필요(E-3)	3.58	3.75	3.38	3.80	3.40
전 체	3.82	4.08	4.00	4.13	3.06

또한 운영기관의 수탁자책임관점에서 운영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의 범위(책무)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연금기금의 투자규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 및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각각 3.38, 3.4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형 생명보험사그룹 및 대형 손해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은 각각 3.75, 3.80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대형보험회사보다 중소형보험회사가 변수 E-3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3. 통계분석 결과

#### 가.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과 관련된 6개문항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통계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V-18>과 같다. 각 변수를 Kruskal-Wallis 분석에 의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독립변수)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독립변수)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변수 B-1, 변수 B-3, 변수 B-5의 경우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V-18>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이 유도하도록 감독당국이 적극 독려할 필요성 존재(B-6)	0.313	0.576	2.885	0.089*
전 체	1.136	0.287	4.372	0.037**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반면에 변수 B-2(원칙적으로 사용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에 대한 Kruskal-Wallis 검증결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형 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는 변수 B-4에서 유의수준 5%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변수 B-6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형 보험회사의 경우 대형 보험회사에 비해,

엄격한 자산운용규제의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분석결과(<표 V-19>참조), 변수 C-3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해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9>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 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DC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가 요구됨(C-1)	0.381	0.537	0.391	0.532
사용자, 수탁기관등 연기금운용관련자 각각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제재조치구체화필요(C-2)	0.245	0.621	0.133	0.715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C-3)	2.273	0.132	2.905	0.088*
종업원정보제공충실, 서류관리·문서명확화, 수탁기관자체적인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책정에 대한 독려필요(C-4)	0.140	0.709	0.070	0.791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C-5)	0.322	0.570	0.418	0.518
종업원의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설정(C-6)	0.170	0.680	0.175	0.676
전 체	0.362	0.547	0.459	0.498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다만 변수 C-3(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존재)에서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그리고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제시된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감독사항에 대해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규제감독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강화의 필요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 다.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표 V-20>과 같은데, <표 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D-2-1(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 존재)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10%유의수준하에서 뚜렷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수 D-5(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은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수 D-2(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와 변수 D-4(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 등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0>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D-2)	2.227	0.136	0.755	0.385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존재(D-2-1)	3.106	0.078*	1.028	0.3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제9조1항 및 제9조2항)의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 수급권을 충분히 보장(D-4)	2.278	0.131	0.478	0.489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D-5)	0.059	0.808	3.488	0.062*
전 체	0.601	0.438	0.117	0.733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 라. 기타 규제감독사항

연금프로우상의 규제감독사항이외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기타 규제감독사항을 설정하여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표 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 E-3(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필요)에서는 각 그룹간(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변수 E-1(퇴직연금제도에 한해 보험사에게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모색필요) 및 변수 E-2(영국

OPRA 등과 같은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 존재)에서는 일부 그룹간에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V-21> 기타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변수	생명/손해		대형/중소형	
	$\chi^2(1)$	p-값	$\chi^2(1)$	p-값
퇴직연금제도에 한해, 보험사에게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모색필요(E-1)	0.220	0.639	8.123	0.004**
영국 OPRA 등과 같은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존재(E-2)	5.759	0.016**	0.174	0.677
운영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 책임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필요(E-3)	0.250	0.617	1.423	0.233
전 체	2.637	0.104	3.551	0.059*

주 : \*\*와 \*는 5%와 10%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즉 변수 E-1에서는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에 5%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변수 E-2에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 5% 유의수준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기타 규제감독사항 통계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대형 보험회사/중소형 보험회사간에 10%유의수준하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형보험회사와 중소형 보험회사간에 규제감독체계를 보는 관점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이를 고려한 규제감독정책방향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4.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분석상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분석결과이지만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측면에서는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규제 및 높은 관리비용 등이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어, 안전성이 저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연금제도초기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연금제도초기의 투자규제는 양적규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미식 지배구조하에서 질적규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금자산운용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수탁자책임 및 리스크관리문제가 향후 중요한 현안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퇴직연금회계기준마련에 의한 부채(잉여금)중시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보험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어떻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회계기준작업이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보험업계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투자규제(분산투자규제 등)존재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면,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 투자대상 및 투자규제의 점진적 완화, 수탁기관의 자주적 윤리규범의 수립 등에는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보험회사의 평균값이 중소형보험회사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여타변수보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형 생명보험사그룹의 평균값이 전사평균값보다 낮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탁

자책임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다소 높다는 지적이 훨씬 많아 5천만원 과태료한도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여섯째, 재무건전성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사에서 특히 퇴직금우선변제조항이 수급권보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무건전성기준에 부합된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에 중소형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무건전성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설정문제는 향후 많은 논란과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금우선변제조항의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급보증제도로는 미국 PBGC식 지급보장제도를 보다 선호함으로써 보험업계는 법적·제도적 수급권보장장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이내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즉 보험업계는 종업원 수급보장차원에서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강화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곱째, 기타 규제감독적 측면에서는 중소형 손해보험사그룹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영국식 독립된 감독기구 설치·운용 등은 신중한 검토작업하에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ruskal-Wallis 검증결과, 연금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의 경우는 대형손해보험사/중소형손해보험사간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 뿐만 아니라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보험업계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은 전사차원에서 그룹간 차이는 없지만 연금계리사에 의한 검증문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간에서,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설정문제는 대형손해보험사/중소형손해보험사간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기타 규제감독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형보험회사/중소형보험회사간 10%유의수준하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규제 감독사항,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사항,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기타 규제감독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정형화된 규제감독체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에는 분석대상의 한계 등으로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이 바라 보는 규제감독체계는 안전성 규제감독체계를 지향하면서 국내실정 및 여건을 고려하되 점진적으로 선진형 규제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보험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퇴직연금제도 규제감독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길 기대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규제감독정책의 방향성을 수탁 기관인 보험회사에 한정(은행등을 미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규제감독체계를 제시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설문문항의 설정과정에서 주관성 및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은행, 종업원 등의 입장에서 바라는 규제감독 체계를 조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Ⅵ.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

### 1. 기본방향

지금까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규제감독체계, 그리고 대표적인 수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니wm분석 등을 통해 연금투자자와 관련된 규제감독,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규제감독,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규제감독체계는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호라는 기본 틀하에서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많은 법적·제도적장치가 마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규제완화의 보완조치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규제감독체계를 지향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규제감독체계는 수십년간의 퇴직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경험한 산물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노하우 및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국내의 여건 및 환경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적차원에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규제감독체계 동향 및 국내 보험회사의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니즈, 그리고 국내의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중시 규제감독이 지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방향이 기본적으로 타목적보다 종업원의 수급권보장확보라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회안전망(Safety Net)으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최대한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익성(효율성)중시 규제감독보다는 안전성중시 사후적 규제감독에 보다 규제감독방향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의 도산 등과 관련된 사후적 규제감독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한 안전성<sup>32)</sup>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삼위일체식 지급보증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삼위일체식(三位一體式) 지급보증제도의 확립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정책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산시, 연금자산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시, 수탁기관 도산시 등 각각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sup>33)</sup>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확정급여형은 기업도산 등에 따른 지급보증확보에, 확정기여형은 연금기금 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책임 등에 중점을 두는 감독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규제감독의 강도는 제도설계의 차이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존재하

32) 과도한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즉 최소한의 안전성중시 규제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복잡한 규제사항, 법령준수를 위한 비용증대, 빈번한 법령의 변경 등과 같은 감독규제가 미국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메리트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아무리 안전성중시 감독규제정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제도 자체로서의 메리트를 상실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33) 미국에서는 최소적립요건의 강화에 의한 지급보증확보, PBGC에 의한 지급보증과 제도종료보험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영국은 직역연금감독청의 설립과 수급권 강화, 연금기금확보차원의 최저적립기준 적용, 연금보상제도(PCS: Pension Scheme Office)에 의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보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므로 사전에 제도설계 방향성 등을 고려한 감독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율투자규제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양적규제가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규제완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점진적으로 자율투자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실제로 신중한 투자원칙이 적용되는 확정기여형보다 확정급여형은 오히려 엄격한 투자규제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제도초기에는 기금운용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양적규제가 바람직하다. 비록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투자리스크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규제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기금의 효율화측면에서 확정급여형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 지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연금자산의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당국의 정책적 방향설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3년 OECD는 연금운용에 대한 5개의 가이드라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OECD가 권고한 5개의 가이드라인은 비단 사용자 및 수탁기관의 연금자산운용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감독당국의 연금자산운용정책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연금자산운용관련 감독규정의 제정 등이 국제적 정합성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투자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속에서 투자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에서 요구되는 OECD가이드라인은 안정적인 이익기반을 바탕으로 한 종업원의 수급권보호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세부추진방향

### 가. 연금자산운용규제

#### 1) 최소한도의 투자규제 건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규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투자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① 법규상 최소한의 투자한도를 제시하는 최소 분산투자가 바람직하며 ② 원칙적으로 사용자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요구되고, ③ 연기금운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 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어느 정도의 투자규제의 한도를 설정할 것인 가하는 문제는 투자규제의 완화속도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금융상품지식,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및 규제를 완화하여 나아가고, 이 속에서 국내실정에 적합한 투자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단계적 투자규제 정책의 수립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수탁기관의 경우, 연금 자산의 투자성향이 다분히 위험선호성향이 아닌 위험회피성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경우도 미국 등 선진국의 종업원과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78%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책임원칙하에 연금자산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4)</sup> 이는 주식

34) 미국종업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1993년 Current population survey),

시장의 불안정성 및 신탁제도의 미발달, 그리고 금융지식의 미흡 등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금자산에 대한 투자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단기적으로는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에 원금보장형 상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운용상품도 high risk - high return형이 아닌 low risk - low return형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투자규제의 원칙도 종래의 일본과 같이 법정투자원칙(legal list rule)을 최소한 2~3년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성숙과 종업원의 금융지식습득 등을 고려, 연금제도가 도입된 3년 이후부터는 영미식 선관주의원칙(prudent man rule)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영미처럼 신탁제도의 발달에 따른 기업형 지배구조가 정착되고 종업원의 자기책임원칙하에 다양한 운용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운용의 폭을 보다 넓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① 연금운용의 전문·특화형 추진 ② 금융상품·서비스의 다양화 ③ 종합적 코스트관리와 운용고도화에 부응한 리스크감독정책 등과 같은 사전적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상시적 퇴직연금 운용 감독체제

연금운용규제의 완화시 나타나는 문제는 연기금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의 증대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수탁기관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연기금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상시적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축이 감독당국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

---

미국 종업원의 약 52%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달리 자기책임하의 위험선호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中央三井信託銀行 確定據出年金研究會 著, 『企業のための 制度設計Guide』, 金融財政事情研究會, 平成12年 12月, pp. 24-25.

으로 리스크감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수탁기관의 운용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리스크감독기준 및 규정의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리스크감독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준용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스크감독규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각각 구분하여 각 제도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둘째,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는 ①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감독 초점 ② 사용자와 금융기관간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감독이, 영미식 지배구조하에서는 ① 수탁기관의 대리인문제감독 ② 수탁자책임 감시기능여부 등에 대한 감독이 리스크감독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수탁기관의 제반리스크를 분류하고 제반리스크별로 스코어링시스템방식에 의해 대처여부를 상시적으로 평가·측정할 수 있는 스코어링감독시스템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과 같은 수탁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 나. 수탁자책임규제

### 1) 일반적인 수탁자책임률의 도입

#### 가)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연금운용의 규제완화패턴 및 영·미식으로의 이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

탁자책임의 명확화가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마다의 수탁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사용자, 운용기관마다 수탁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 행정처분, 배상책임 등을 수탁자책임 위반사항별로 차별화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계약시 사실 미고지 금지의무 등 포함)하다.

#### 나)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검토

수탁자 책임을 둘러싼 소송(배상책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다만 현재 PBGC와 같은 연금급부보증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Fidelity Bond의 발행은 불가능하며,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역시 이를 취급할 손해보험사들의 준비가 미진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충실, 서류의 관리·문서의 명확화, 그리고 운용기관 자체적으로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당국차원의 지원·독려대책이 요청된다.

#### 2) 투자교육 등 정보공시의 강화

자산운용이 자율화되면 기업은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운용기관 및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기관측의 충분한 정보공시와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공시의 철저는 운용기관 및 제공상품·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업원이 운용지시에 필요한 정보, 사

용자가 소송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①사용자 → 가입자(자산·부채 정보공시 의무화 등), ② 사용자 → 근로자대표회의, ③ 운용기관 → 사용자, ④ 사용자 → 주주·투자자 등 각각과 관련된 정보공시를 체크하여 감독규제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자주적 윤리규범 및 컴플라이언스 체제구축 유도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기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운용부문과 사무처리부문의 명확한 분리, ② 운용부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령준수부서를 설치하여 시장률 및 사내률의 철저 등이 요구된다. 또한 자산운용업계 전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윤리규범의 책정과 준수를 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히 투자성과기준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 증권분석협회는 투자성과기준을, 미국투자관리조사협회는 증권애널리스트의 윤리규범으로 성과제시기준을 제정하여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성과기준은 제정시 기금을 위시한 투자자도 운용기관을 선정·평가하는데 유용하며 운용기관간의 성과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

## 다. 재무건전성규제

### 1) 예금자보호법의 보완·정비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 즉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여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퇴직연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존

재하고 있다.

따라서 건당 5,000만원이라는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예치기간 및 예치금액을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의 연금화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강제저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임의저축적 성격을 지닌 일반예금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장기상품이므로 가입기간이 증대함에 따라 그 금액 역시 증가하여 대부분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준강제적 저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개 기업전체 종업원의 평균예치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타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타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재 퇴직연금제도와 상충하는 부분, 즉 보험형의 경우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단계적인 지급보증체제 확립

### 가) 최소책임준비금제 도입검토(단기)

미국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의해 최소적립기준(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s)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지급보증체제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2년에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에 대하여 최소책임준비금규제(minimum funding rule)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영국은 기본적인 최소적립요건은 95년 연금법에 기금의 자산가치가 기금의 부채규모

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단계에서 적용하지 않고 수년간의 제도운영과정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보완, 우리실정에 맞는 정형화된 최소책임준비금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나) 미국식 지급보증체제 지향(장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PBGC, 영국의 PCB 등과 같은 별도의 수급권보증기구가 설립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권보증기구의 설립·운용은 어느 면에서 기업의 추가부담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설립시기 및 방법 등은 기업의 부담능력과 더불어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 ① 지급보증보험료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1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적 복리후생수준이 낮다는 점과 퇴직연금 도입초기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도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퇴직연금제도가 가입비율방식이 아닌 적립비율방식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도입된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연금지급보증의 미비에 따른 가입자간 형평성문제이었다. 실제 일본에서도 적격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간 형평성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선진국과 같은 정상적인 형태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IMF이후의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기업들의 사정상 미국의 PBGC와 같은 사전차출방식의 연금지급보증공사 설립에는 재정상 부담이 가중되어 오히려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데, 즉 연금급부보증공사를 설립하되, 기업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일정기간 손금산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② 지급보증기구가입의 단계적 확대

우리나라는 적립비율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사외적립분에 대해서는 연금수급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내에 적립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점차 기업의 사외적립비율을 높여 지급보증의 정도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제도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적립되어 제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정착된 이후에 미국식의 연금급부지급보증공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계적 확대의 경우에도 보험료적용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사외적립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립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

## 3) 연금재정의 검증체제 정비

### 가)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 필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계리사의 역할은 퇴직연금의 운용시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감사인의 역할이상으로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계산기초율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설계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검증 등과 같은 고도한 전문적 연금수리지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증하도록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독립시킨 사외이사적 성격의 연금계리사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의 감시 및 감독강화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선진국처럼 연금계리사제도의 도입이 절

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상의 미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일정자격요건을 지닌 보험계리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연금계리사와 회계감사인,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한층 명확한 기준이 사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회계의 도입에 따라 연금부채의 계산 등 연금수리적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나) 감독규제차원에서 지급능력비율제도 제정 등

감독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연금제정의 건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일정한 툴(Tool)마련을 검토함으로써 감독규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보험에 대한 지급능력비율이나 적립비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능한 한 연금기금의 파산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책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기금의 적립부족액이 지나치게 큰 기업을 추출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시정책을 요구하는 조기경보프로그램을 1990년대에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철저한 연금기금의 사전적 감시감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금기금은 사용자의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기금종결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의적인 기금종결을 통한 가입자의 피해방지 및 기금종결방지를 위한 기금자체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다) 연금회계기준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강화

미국 등 세계각국은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차원에서, 그리고 연금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차원에서 연금회계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퇴직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즉 연금회계제도의 도입문제는 객관적인 비교가능성, 즉 회계정보의 투명성측면에서 검토됨과 아울러 종업원의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투자자도 보호될 수 있도록 연금회계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연금정보공시를 통해 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의 자산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연금부채에 대한 최저적립, 연금부채의 추정방식 등에 대한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할인율·승급률·장기기대수익률 등)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금회계기준의 제정은 투자자의 이익보호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관리 등 기업경영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존재하고 있다. 즉 부채의 시가평가, 연금비용계상 등을 통해 연금부채 구조에 따른 자산운용(ALM적 자산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자산중시의 위험관리에서 부채중시의 위험관리(연금기금의 잉여금관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3. 향후과제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연금자산투자규제, 수탁자 책임규제, 재무건전성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지만, 향후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향후과제도 더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운용기관의 에이전시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는 점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운영시 ① 적립부족과 소득격차, ② 장수리스크와 역선택, ③ 운용기관의 대리인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이를 고려한 감독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적립부족 및 소득격차면에서는 확정급여형에 비해 소득계층에 따라 자산잔고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여 조기인출비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적립잔고가 낮은 저소득층에 현저하고 소득세 이외에 10% Penalty세를 부과하더라도 생활비 및 부채상환에 활용함으로써 401k가 연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8%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소득이 높은 사람의 저축수단으로 활용)이기 때문이다.

<표 VI-1>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성과비교

		미국주식	소형주	외국주식	채권
확정기여형 (DC)		-5.1	-2.6	+3.9	+0.2
확정급여형 (DB)	외부예탁	-3.1	-2.3	+3.9	+0.8
	내부운용	-2.7	+0.2	+5.2	+0.5

주 : 벤치마크대비의 수익(%)  
 자료 : Ambachtsheer(1999)

또한 운용기관의 대리인 문제, 즉 연금기금처럼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아 정보의 갭차이로 인한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액티브운용이 운용보수가 높아 능력과 무관하게 액티브운용을 지향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Ambachtsheer(1999)에 의하면 확정기여형의 운용수수료는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액티브운용에서 약 50% 높고, 패시브운용에서 거의 2배가 되는데 비해 운용성과는 확정기여형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주장(확정급여형에서도 금융기관의 에이전시문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① 확정기여형의 비과세한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② 확정기여형의 강제적인 적립을 통해 조기인출이 불가능하

도록 하는 문제 ③ 확정기여형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퇴직후 소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종신연금화하는 문제 ④ 대리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강화이외에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주요 현안과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허용문제를 들 수 있다. 즉 보험회사는 컨설팅업무와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는 사용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자산관리업무는 보험회사가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모든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신탁경영을 허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없는 한, 자산운용관리업무의 취급이 불가능하여 확정기여형 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에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복수의 자산관리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sup>35)</sup>

셋째, 연금기금의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행사문제를 들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기관투자자(연금기금)에 의한 의결권의 적극적 행사 등 경영감시행위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역할

---

35) 특히 DC형의 경우 은행 등에 비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자산운용능력 및 리스크관리기법적 차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차원에서 ① 연금전환시 세제혜택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② 신탁업무의 취급범위를 보험회사에게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영전략적 차원에서는 ① 연금전문인력의 확보 ② 자산운용자회사의 설립 및 제휴검토 ③ 가격설정리스크의 철저관리 ④ 법률(소송)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 등이 요구된다.

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에서는 수탁자책임대상에 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퇴직연금기금의 규모가 증대하고 기업의 경영감시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등을 통한 경영감시필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운용기관의 수탁자책임관점에서 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의 범위(책무)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연금기금의 투자규제(의결권지분제한규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관투자자로서의 연금기금의 역할을 제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투자규제 및 수탁자책임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Ⅶ.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에는 3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확립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만 입법예고 되어 있을 뿐, 재경부 및 노동부간의 의견조율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연금자산운용규제, 수탁자책임규제, 재무건전성규제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후에 대표적인 수탁기관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봄으로써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본방향을,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세부방향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일찍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차이가 뚜렷하고, 특히 위험회피성향이 매우 강해 안전성중시의 규제감독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단 재무건전성규제에서 뿐만 아니라 연금자산운용규제 및 수탁자책임규제에서도 영미식 규제감독체계보다는 일본식 규제감독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규제감독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내상황과 여건에 부응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하에서 즉 ① 연금제정의 안전성중시 규제감독 지향 ② 삼위일체식 지급보증체제의 확립 ③ 자율투자규제체

계로의 점진적 전환 ④ OECD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연금자산의 운용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체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세부적 추진방향에서 첫째, 연금자산운용규제면에서는 ① 최소한도의 투자규제 견지 ② 단계적 투자규제 정책의 수립 ③ 상시적 퇴직연금 운용 감독체제 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수탁자책임규제면에서는 일반적인 수탁자책임률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데, 이는 ①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②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검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투자교육 등 정보공시의 강화, 자주적 윤리규범 및 컴플라이언스체제구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당국의 역할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재무건전성규제면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의 점진적 보완·정비를 통해서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급보증체제의 확립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최소책임준비금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지급보증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금재정의 검증체제 정비측면에서 ① 연금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 필요 ② 감독규제차원에서 지급능력비율제도 제정 ③ 연금회계기준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만 향후과제측면에서 운용기관의 에이전시문제,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허용문제, 연금기금의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행사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요구된다.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제는 정적인 측면이 아닌 동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제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근본목적, 즉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호와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류건식,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규제 및 감독방안」, 보험개발원 주최 정책세미나, 2003년 10월., pp. 67-120.
- 류건식, 「미국기업연금의 운영과 재정제도」, 『사회보장연구』 제13권, 1998., p.142.
- 성주호, 「연기금 지급능력 안전성을 위한 장기상각 전략방안」, 『보험개발연구』, 2004년 3월., pp. 67-96.
- 신기철, 「기업연금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증권예탁지』, 2003. 4., pp. 1-40.
- 민재성, 김원식, 『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KDI, 1990.11
- E. Philip Davis, *Pension Fund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elmut Reisen, “Liberalizing Foreign Investments by Pension Funds: Positive and Normative Aspects”, *OECD Working Paper*, January 1997.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Mutual Funds and the Retirement Market, Fundamentals*, July 1999.
- N.G.Terry and P.J.White, "The role of pension schemes in recruitment and motivation : Some survey evidence", *Employee Relations*, Vol.19 No.2, 1997, pp.160-175.
- OECD, *Draft Guidelines on Pension Fund Asset Management*, 2003.11.
- OECD, *Supervisory Structure for Private Pension Fund : Survey Analysis*, 2003.11.
- OECD, *Survey of Investment Regulation of Pension Funds*, 2003.6.
- 山口修, 『確定拠出年金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3. 5.

- 土浪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關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險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 中島富三, 『確定拠出年金』, 國政情報센터 2002. 8.
- 富士綜合研究所(2002), 『企業年金の資産運用』, 日本法令, 2002년 11월, p. 165
- 厚生年金基金聯合會 編, 『運用自由化時代の年金基金の資産運用』, 東洋經濟新報社, 1999.2.
- 中央三井信託銀行 確定拠出年金研究會 著, 『企業のための制度設計Guide, 金融財政事情研究會』, 平成12年 12月.
- 吉原健二, 『21世紀の 企業年金』, 東洋經濟新報社, 平成9年 9月.

## <부록>

### <별첨 I>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관련 설문서

보험회사 :

부 서 :

작 성 자 :

퇴직연금제도가 금년 7월 도입예정으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제 감독은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선진국의 규제감독사례 등을 통하여 향후 연금기금운용시 고려되어야 할 규제감독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규제감독이 보다 정형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탁기관, 근로자, 기업, 감독당국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감독체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설문서는 우선 수탁기관입장에서 퇴직연금 규제감독방안이 어떻게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가를 사전에 살펴보고자 작성한 설문서입니다.

본 설문결과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봄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설문조사과정에서 얻어진 개별 보험회사의 자료 및 내용 등은 결코 외부에 실명으로 공표하거나 제시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널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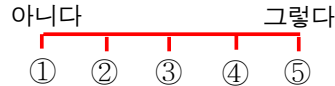
2004. 2. 18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내용문의사항 및 설문조사결과는 keon@kidi.or.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I. 일반적인 규제감독관련 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I-1)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은 수익성중시 규제감독, 안정성중시 규제감독 중 어느 규제감독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수익성중시 규제감독정책 지향
- ② 안정성중시 규제감독정책 지향

I-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진출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① 정부의 지나친 규제제도 ② 높은 관리비용
- ③ 복잡한 보험수리적용 ④ 제도와 관계없는 비즈니스상의 사정
- ⑤ 법령준수를 위한 비용증대 ⑥ 빈번한 법령변경
- ⑦ 기타 : ( )

I-3) 퇴직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신탁제도에 대한 노사인식부족으로 영미의 지배구조보다는 단순한 계약형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 ).

I-4) 신중한 투자자원칙이 적용되는 확정기여형보다 확정급여형은



자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2) 원칙적으로 충실의무 등의 수탁자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사용자(기업주)자산에 투자를 금지 또는 규제하는 자기투자규제가 바람직하다( ).

II-3) 연금기금 운용의 투자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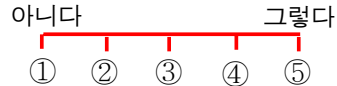
II-4) 제도도입초기에는 원금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선택사항에 원본보장형 상품(법률에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5) 향후 근로자의 금융상품지식 증대, 영미식 신탁제도의 발전,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대상 및 투자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II-6) 운용기관이 금융자본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운용기관이 자주적 윤리규범의 확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Ⅲ.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 Ⅲ-1) 연금운용의 규제완화패턴을 감안하는 경우 확정기여형은 장기적으로 선관주의(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책임명확화가 요구된다(            ).
- Ⅲ-2)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마다의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
- Ⅲ-3)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 Ⅲ-4) 종업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충실, 서류의 관리·문서의 명확화, 그리고 운용기관 자체적으로 수탁자책임가이드라인의 책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독려대책이 요구된다(            ).
- Ⅲ-5) 자산운용이 자율화되면 기업은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운용기관 및 금융상품·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기관측의



- ① 최소 책임준비금제도    ② PBGC 등과 같은 지급보증제도

IV-2) 연금계리사 제도도입에 의한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이 필요하다 (    ).

IV-2-1) 연금계리사가 기업별 퇴직연금재정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IV-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현재 근로자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천만원 예금자보호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적당하다    ② 5천만원~1억원이 적당
- ③ 1억원~1억 5천만원이 적당    ④ 1억5천만원 이상이 적당

IV-4)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퇴직금의 우선변제규정>

-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9조 1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9조 2항>

- ① 많이 보장되어 있다
- ②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 ③ 잘모르겠다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다
- ⑤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

IV-5)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제12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재무건전성요건을 갖춘 수탁기관만이 수탁업무를 하도록 한 규정은 바람직하다( ).

### V. 기타 규제감독사항

※ 괄호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오점척도의 기준에 맞추어 답을 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V-1)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에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복수의 자산관리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

V-2) 퇴직연금의 업무전문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연금재정의 감독체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영국의 퇴직연금감독기구(OPRA) 등과 같이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        ).

V-3) 운용기관의 수탁자책임관점에서 운용기관의 의결권행사문제를 수탁자책임의 범위(책무)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연금기금의 투자규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고하셨습니다.

## &lt;별첨 II&gt;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투자규제

국명	투자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호주	없음	10%에서 2001년 1월 5%로 하향 (연금 가입자에 대한 용자나 금융 지원 금지)	없음	없음
오스트리아	없음	감독당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10%까지 허용	35% 이상 자산을 담보부채권, 국채, 유로화표시 회사채에 투자 50% 비유로권 해외자산 투자	없음
벨기에	-10% zone A 이외 지역의 주정부, 지역공공기관 또는 회사 -10% 비상장시장에서의 주식 -10% -5% 부동산 증서 -5% 파생상품 -5% 무보장대출 (1인당1%이하) -10% 단일부동산 자산	- free asset의 15%	- 모든 자산은 벨기에와 EC영역내에 있어야 함 -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은행위원에서 인정받은 금융기관에 한해서 투자 가능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캐나다	-10%총장부가에서 단일 기업 또는 개인의 주식, 채권 -5% 단일 자산	-허가(단, 전체 자산의 10%로 제한) -증권은 공공거래를 통해 획득해야 함	해외증권투자 30%이내	동일회사의결권지분 30%이내
체코	-단일 발행자의 증권은 10% 한도 편입 -단일은행의저축 10% 까지 허용(단일부동산 또는 유동 자산은 전체 연기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른 연기금의 지분에 대한 투자 금지	- 해외 투자는 OECD 국가의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한해서 허용	-연기금은 동일회사의 유가증권을 해당회사 전체의 20%를 초과하여 이상 포함시킬 수 없음
덴마크	-자산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동일 자산에 대해선 규제	-기업연금에 한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는 8% 제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고위험 자산은 70% -부동산 70% -최소80%이상의 currency matching 규제 (부채의 50%까지 유로화 표시자산 보유)	기업 연금의 경우 단일기업에 대해 8% 이상의 투자 금지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 보증대출 또는 quoted share</li> <li>- 최대 5% 단일기업의 quoted와 unquoted 지분</li> <li>- 15% 단일 부동산 또는 건물 그리고 단일 자산 또는 부동산 회사에 의해 보증된 담보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li> <li>- 15% 단일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로이외의 통화로 표시한 자산에 대해서는 20%</li> <li>- 모든 자산은 EEA 국가들에 위치해야 함 (단, EEA에 준하는 국가 OECD 국가도 가능)</li> <li>- 5% EEA가 아닌 OECD국가 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li> </ul>	5% 단일회사의 quoted 또는 unquoted 지분
독일 Pension-fonds	5% 단일 발행자 30% 정부대출, 은행 예금, 담보채권	5% 다수의 기관에 의해 보증될 경우 10%	70% 유동성자산	5% 다수의 기관에 의해 보증될 경우 10%
Pensionkassen	5% 단일 발행자 30% 정부대출, 은행 예금, 담보채권	5%	80% 유동성자산 35% EU 증권 25% EU 부동산 10% 비EU 증권 10% 비EU 채권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헝가리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동일 발행자의 증권을 10%이상 편입 금지  한 금융그룹내의 기관들이 발행한 증권을 전체 펀드에서 20%를 초과하여 편입 금지	연기금 펀드는 연기금 각출, 운용과 관련되는 회사지분을 10% 초과하여 투자 금지	해외투자 30% 초과 편입금지  전체 해외투자에서 비 OECD 투자는 20% 미만	연기금은 기업의 10%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할 수 없음  동일한 발행자 증권을 10% 이상 보유 금지
아이슬랜드	- 동일집단이나 기관의 증권을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금지 - 정부보증 증권의 경우 상한선 없음 - 금융기관 이외의 무담보 회사채의 경우 5% 이상 편입 금지	연기금 관리자나 스텝에 대한 대출은 금지 그러나 연기금 가입자인 경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대출 가능	- 정부보증 채권, 담보 대출 및 증권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 50% 이상 편입 금지 - 해외투자는 OECD국가의 증권만 허용 (quoted는 50% 까지 unquoted는 10% 제한)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50% 이상 해외의무	연기금은 기업 지분의 15% 이상 편입 금지 (단, 연기금을 위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거나 25% 이상의 지분이 단일개방형펀드에 소유되어 있는 경우 제외)

국명	투자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아이슬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집단이나 기관의 증권을 총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금지</li> <li>-정부 보증 증권의 경우 상한선 없음</li> <li>-금융기관 이외의 무담보 회사채의 경우 5% 이상 편입 금지</li> </ul>	연기금 관리자나 스텝에 대한 대출은 금지 그러나 연기금 가입자인 경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대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보증채권, 담보대출 및 증권을 제외한 자산의 경우 50% 이상 편입 금지</li> <li>-해외투자는 OECD 국가의 증권만 허용되며 이중 quoted는 50% 까지 unquoted는 10% 까지 제한</li> <li>-외화표시자산의 경우 50% 이상 해외의무</li> </ul>	연기금은 기업지분의 15% 이상 편입 금지 (단, 연기금을 위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거나 25% 이상의 지분이 단일개방형펀드에 소유되어 있는 경우 제외)
아일랜드	없음(단, 지급여력입증시 동일집단이나 기관의 증권에 10%의 한도 부여)	제한 없음(단, 회사자산은 지급여력입증시 전체 자산의 5% 한도 부여) - 자기투자가 전체 자산의 5%를 상회할 경우 공개 의무	없음	없음
일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규제 없음
룩셈부르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이탈리아	단일발행자증권은 전체연기금 15%이내로 제한	허용(동일회사 연기금은 20% 미만, 다수의 회사인 경우에는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이상의 자산을 연금지급통화와 동일한 통화 표시자산에 투자</li> <li>-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OECD 국가 증권은 50% 미만</li> <li>-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비OECD 국가 자산은 5% 미만</li> <li>-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OECD 자산은 투자 금지</li> </ul>	폐쇄형투자펀드 25% 이내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관련 증권은 기준에서 제외</li> <li>- 5% 신용등급 AAA 단일기관</li> <li>- 3% 신용등급 AA 단일기관</li> <li>- 1% 신용등급 A</li> <li>- 15% 같은 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li> </ul>	5%까지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이상의 자산이 물가 연동 증권이어야 함</li> <li>- 10% 민간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li> <li>- 멕시코기업의 외화표시 증권인 경우 BBB- 이상이어야 함</li> <li>- 발행 증권은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의 등급을 받아야 함</li> <li>- 해외 증권에 대한 투자는 금지</li> </ul>	20% 동일발행자의 지분
네덜란드	분산투자 원칙 없음	기업주투자 5%이내		없음
뉴질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산투자 의무</li> <li>-0.5%단일무보증대출</li> <li>-한기업과 관련된 증권 및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연기금의 10%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금납부 기업주에 대한 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하며 전체 자산의 20%이하</li> <li>-연기금은 각출 기업의 주식 소유 금지</li> </ul>	연금을 지급시 사용하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의 자산에 적어도 80% 투자	없음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한기관에서 제공된 담보</li> <li>-5%하나의 같은 계열 은행 저축</li> <li>-2% 폐쇄형 단일투자 펀드투자(5%개방형)</li> <li>-5% 단일 또는 동일 계열기관에서발행한 증권</li> </ul>	<p>OPF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금자산은 연기금 납부기업 및 관련기관의 자산에 투자 금지</li> </ul> <p>EPF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F회사증권에 투자 금지</li> <li>-EPF회사의 주주 또는 관련사의 증권에 5% 이상 투자 금지</li> <li>(공개거래 대상 증권 의 경우 12.5%)</li> <li>-7.5% 이상의 자산은 공개거래 대상 증권에 투자</li> </ul>	해외투자는 5%	OPF:연기금은 단일담보,기관, 폐쇄형드에 10% 이상 투자 금지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포르투갈	-5% 단일사업자의 증권 또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 -10% 단일부동산에 대한 투자	-20% 연기금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을 근거로 발행된 증권 -25% 연기금을 납부하는 회사 또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회사의 부동산	-적어도 80% 포르투갈내 연기금의 기준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 -20% 해외 투자 (10% 비OECD 채권, 3% 비OECD 주식)	-단일회사지분 10% 이상 보유 금지 -연기금운용자는 의결권 지분은 20% 이상 보유 금지
슬로바키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스페인	10% 단일기관에 대한 투자	10% 이내	-90% 자산은 공식적거래시장에서 인정 자산에 투자 -예금 또는 다른 시장의 자산은 1~15% 이내 -OECD 회원국 증권은 제한 없음	-단일기관의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스웨덴	FSR : 없음	FSR 없음	FSR : 없음	FSR : 없음
	-IR: 5% 단일기관의 주식, 채권, 등 증권 -5% 단일 부동산 -10% 투자펀드	IR: 없음	IR : 없음	IR : 없음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단일기관에 대한 채권 (해외는 5%)</li> <li>국채, 은행, 보험사는 제외</li> <li>- 동일회사증권에 대한 투자 10% 이내 (해외는 5%)</li> </ul>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은 헤지용도로 제한</li> <li>- 30% 해외투자 (이중 25% 주식, 20% 외화 표시채권, 30% CHF채권)</li> <li>- 상품별 제한(국내외 주식 50%, 국내외 채권 30%, 국내외 부동산 70%)</li> </ul>	없음
터어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단일기관의 금융증권에 대한 투자</li> <li>- 한계열기업군의 금융증권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납부기업 및 운용기관자기투자금지</li> <li>- 연기금은 기금을 납부하는 기업주식의 소유는 20% 까지 제한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이사회 의장과 임원, 직간접 관계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관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증권만이 연기금펀드의 투자 대상</li> <li>- 일반회사의 증권은 5~40% 범위에서 투자</li> <li>-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5% 이하</li> <li>- 거래소의 주식 투자는 20% 이하</li> <li>- 국채는 30% 이상</li> <li>- 해외증권은 15% 이하</li> <li>- 파생상품투자는 헤지용도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회사연기금펀드는 5%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 보유 금지</li> <li>- 한 연기금기관이 설립한 펀드들은 합산하여 20%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 보유 금지</li> </ul>

국명	투자 규제			
	분산투자 규제	자기 투자규제	총량 규제	의결권 제한규제
영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기업주자산 5% 이내	없음	없음
미국	분산투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부여	- 모든 DB형과 일 부 DC형 연기 금에서 고용주 의 증권이나 부 동 산 투 자 는 10%로 제한 - 이해관계가 있 는 집단 사이의 거래는 제한되 며 위반시는 세 금 공제에서 제 외	미국 법원의 인 정을 받은 자산 으로 제한	없음

## &lt;별첨Ⅲ&gt; OECD주요국의 연금기금 포트폴리오규제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호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오스트리아	50%	2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벨기에	없음(quoted) 10% (unquoted)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캐나다	없음	25% 부동산 또는 자원 자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체코	25%(quoted)	없음	없음	25%	0%	10%
덴마크	70%	없음 (우량증 권의 경우)	없음 (우량증권의 경우)	70%	없음 (우량증 권의 경우)	없음
핀란드	50% (quoted) 10% (unquoted)	40%	없음	없음	70%(부 동산 및 빌등을 포함하는 담보 대출) 10%(후 순위 대출)	없음
독일 Pensions -Kassen Pensionsf -onds	35% (quoted) 10% (unquoted) 없음	25%  없음	50%  없음	35% (주식포 함)  없음	50% (담보) 10% (그외) 없음	50%  없음
아이슬 란드	50% (quoted) 10% (unquoted)	0%	50% (금융기관) 50% (지방자치단 체)	없음	없음	없음

국 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헝가리	50%(MPF)	5%(직접투자) 10%(부동산투자펀드 포함)	30%(기업, 지방자치단체) 없음(금융기관) 25% (담보)	50%	0% (MPF)	없음
	60%(VPF)	10% 직접 또는 부동산 투자 펀드 포함	상동	상동	30% (VPF) 5% 펀드가 입자 대출 (VPF)	없음
아일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탈리아	없음	없음	없음	20%	없음	20% (유동자산)
일 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	없음
한 국	40%	15%	-	-	-	-
룩셈부르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멕시코	0%	0%	없음(국채, AAA 등급 회사채) 35% (AA 등급 회사채) 5% (A 등급 회사채)	0%	0%	25만 페소 \$2,500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까지 예금)
네덜란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뉴질랜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노르웨이	35%	없음	30% (회사채)	30%	1% (무담보 대출)	없음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폴란드 OPF	40% (quoted) 10% (secondary market 또는 비상장 주식)	0%	30%(담보) 15%(지방자 치단체) 10%(회사채)	10% (국립투 자펀드), 10% (폐쇄형) ,15% (개방형)	Equal to investme nt in the shares of the borrower	20%
EPF	없음	0%	5%	없음	상동	없음
포르투갈	50%	45%	60% (회사채)	30%	25% (담보)	30%
스페인	없음 (quoted) 10% (unquoted)	없음	없음	없음	10% (담보보 증이 없는 경우)	15%
스웨덴	FSR :0%	FSR :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가치 의 4/5 또는 2/3또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70% 는 60%	FSR : 없음 (주정부나 그에 준하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을 하여야 함	FSR :0%	FSR:없음 (담보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한 대출만 허용)	FSR: 0%

국명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스웨덴	IR: 25% (quoted) 10% (unquoted)	IR: 25%	IR : 없음 주정부채 권 또는 그에 준하는 채권의 경우  75%다른 경우  10% unquoted	IR : 투자 펀드는 직접 소유 자산에 같은 종류별로 합산한 후 그 합이 해당 자산 구성한도를 넘지말아야 함 (25% quoted share)	IR: 25%(부 동산담보 대출)  10%다른 경우	IR: 75%
스위스	30%	20%				
터키	없음	0%	없음	10%	10%	10%
영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용주 관련 대출 금지	없음
미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고용주 관련 대출 금지	없음

### <별첨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안)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연금 제도 등 퇴직급여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li> <li>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li> <li>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li> <li>4. “퇴직급여”라 함은 이 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말한다.</li> <li>5. “퇴직연금”이라 함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말한다.</li> </ol>	<p>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6.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이라 함은 가입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p> <p>7.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이라 함은 사용자의 부담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p> <p>8. “개인퇴직저축계좌” 라 함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그 일시금 등을 적립하여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를 말한다.</p> <p>9. “가입자” 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한다.</p> <p>10. “퇴직연금사업자” 라 함은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관한 자산관리업무 및 사무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11. “자산관리업무” 라 함은 가입자별 계좌 설정, 부담금 수령,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적립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DC형)</p> <p>12. “사무관리업무” 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당해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운용결과에 기록·보관·통지,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DC형)</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퇴직급여제도)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2장의 퇴직금제도, 제3장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4장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1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또는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p> <p>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④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 조(제외 대상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자</li> <li>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퇴직금제도</b></p> <p>제5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p> <p>③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p>	<p>제 조(평균임금)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p> <p>제 조(퇴직보험 등) ① 법 제 5 조 제 3 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p>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p>3.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p> <p>4.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p> <p>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6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p> <p>③제2항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사용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b></p> <p>제8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9조(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퇴직연금의 가입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할 것]</p>	<p>제 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요건)①법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퇴직하는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급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가입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 <p>3.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급여의 예상액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p> <p>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2.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p> <p>3. 퇴직연금의 급여액에 관한 사항(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금의 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노령연금은 퇴직시 수령하게 될 일시금의 액을 기초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할 것)</p> <p>4.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사용자는 매년말 퇴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것)</p> <p>5.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될 것)</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 조(연금의 종류 및 수급자격)①법 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p> <p>②일시금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자 중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된다.</p> <p>제 조(가입자 명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b>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b></p> <p>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 장에서 “퇴직연금”이라 한다)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장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규약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li> <li>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가입기간은 퇴직연금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격 취득전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4.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에 관한 사항</p> <p>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며, 그 외에 해당 사업의 주식 등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을 것</p> <p>나. 가입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에 추가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p> <p>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다만 가입자의 탈퇴시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미납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5.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선정을 통하여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p> <p>6.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p> <p>가.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3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될 것</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나.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원금 보장방법(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이 포함되며,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대상과 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 일 것</p> <p>다. 운용방법별 이익의 예상 및 손실의 가능성 그 밖에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p> <p>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결과, 운용방법, 그 밖에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실시될 것</p> <p>7.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사항(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될 것)</p> <p>8.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될 것)</p>	<p>제 조(중도인출 사유 및 기간) 법 제1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자이었던 자의 6월 이상의 실직</li> <li>2. 부양가족의 장기간의 요양</li> <li>3. 주택구입</li> <li>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급여의 종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령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p> <p>10.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p> <p>11.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이 명시될 것)</p> <p>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2조(퇴직연금사업자)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및 일반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p>	<p>제 조(인가요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가입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p>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p>	<p>※ 1 호 및 제2호는 신탁업법 제3조의3과 동일</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④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다.</p> <p>제13조(자산관리업무의 위탁)사용자는 규약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에 충당할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업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li> <li>2.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li> </ol> <p>제14조(사무관리업무의 위탁)사용자는 사무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받은 사무관리업무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p>	<p>제 조(자산관리계약)①법 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가입자를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것일 것</li> <li>2.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li> </ol> <p>②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계약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가입자를 수익자로 하는 것일 것</li> <li>2.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개인퇴직저축계좌</b></p> <p>제15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가입자격)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6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취급)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 인가를 받은 자는 개인퇴직저축계좌를 취급할 수 있다.</p> <p>제17조(개인퇴직저축계좌의 가입)개인퇴직저축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 및 사무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18조(개인퇴직저축계좌 계약의 요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은 제11조의 퇴직연금규약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담금의 납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6장 책무 및 감독</b></p> <p>제19조(사용자의 책무)①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li> <li>2.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li> <li>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20조(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①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할 것</li> <li>2.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3. 사무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가입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가입자 또는 당해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p> <p>②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p> <p>2.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행위</p> <p>제21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징수하거나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들어가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징수하거나 질문 또는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퇴직연금 설정·운영이 법령, 규약 또는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③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 2항의 시정 또는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처분에 위반되거나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②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취급정지 또는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장 보 칙</b></p> <p>제23조(수급권의 보호)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될 수 없다.</p> <p>제24조(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사용자의 부담금 미납부 또는 사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된 경우 그 이후 시점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적립금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5조(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처리)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6조(정부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퇴직급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퇴직연금 및 개인 퇴직저축계좌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한다.</p> <p>제27조(업무협조) 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 고용보험법 제 81조의 2와 동일한 내용</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8장 별 칙</b></p> <p>제29조(과태료)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30조(벌칙)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 1 조 ( 시 행 일 ) 이 법 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년 ○월 ○일부터 적용하되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의 비용부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조(급여 및 비용부담)①연도별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1/2</li> <li>2.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5/6</li> <li>3. 200○년 ○월까지 : 30일분 평균임금의 2/3</li> <li>4. 200○년 ○월이후 : 30일분 평균임금</li> </ol> <p>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비용 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년 ○월까지 : 매월 임금총액의 1/24</li> <li>2. 200○년 ○월까지 : 매월 임금총액의 1/20</li> <li>3. 200○년 ○월까지 : 매월 임금총액의 1/16</li> <li>4. 200○년 ○월이후 : 매월 임금총액의 1/12</li> </ol>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2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로 본다.</p> <p>②퇴직금우선변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 우선변제는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p> <p>2. 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 우선변제는 1997년 12월24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의 1997년 12월 24일 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p>		

법(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p>제3조(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제34조, 제37조제1항중 “퇴직금” 및 제37조제2호는 삭제한다.</p> <p>②그 밖에 다른 법에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인용·준용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 본다.</p> <p>③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p>	<p>제 조 (이 영에 의한 다른 영의 개정)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을 “이 법 제5조 제3항, 제3장, 제4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로 한다.</p>	

##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명보험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 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12

2004-1 부유층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 I ) / 김영욱, 차일권, 1998.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업창회, 1999.1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업창회,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운,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2003-7 퇴직연금 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오영수, 2004. 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 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자동차보험본부, 2004. 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6 역모지기 (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정기간행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간	_____
<input type="checkbox"/> 보험통계월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간	_____
<input type="checkbox"/> 보험동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간	_____
<input type="checkbox"/> 보험개발연구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b>연회비</b>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b>제공자료</b>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 (5~10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계간)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 (5~10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계간)	-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 보험통계월보 -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 4407 팩스 : 368-4099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 저 자 약 력

류건식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계리인  
『보험수리학』, 『보험이론 및 실무』의 다수  
전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전 보험감독원 연구위원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e-mail: keon@kidi.or.kr)

이태열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  
(e-mail: tylee@kidi.or.kr)

연구보고서 2004-2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04년 7월 日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신우씨엔피

전화 (02) 2267-4112

---

ISBN89-5710-011-3 93320

정가10,000원